

정임하

제5회 전국 장애인운동 활동가대회

2009년 8월 5일 ~ 7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자랑하라

제5회 전국 장애인운동 활동가대회

2009년 8월 5일 ~ 7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자료집 순서

- 제5회 전국장애인운동활동가대회 일정표 ————— 5

- [사전마당] 반성폭력 내규 교육 ————— 7

- [오리엔테이션] 몸 풀기, 마음 풀기 ————— 21

- [제1마당] 소통하기 ————— 25

- [제2마당] 장애인 인권의 현실: MB정부와 장애인 인권1 ————— 29

- [제2마당] 문제의 제기: MB정부와 장애인 인권2 ————— 75

- [제2마당] 실천 전략 만들기: MB정부와 장애인 인권3 ————— 83

- [마무리 마당] 장애인중선언문 채택 ————— 87

- [부록] 장애인 운동 관련 민증가요 ————— 89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차별철폐투쟁가/ 장애해방가/ 장애인이동권쟁취가

<제5회 전국장애인운동활동가대회 일정표>

	8/5(수)	8/6(목)	8/7(금)
07:00~08:00		기상	기상
08:00~09:00		아침 식사	
09:00~10:00		[제2마당]장애인 인권의 현실: MB정부와 장애인 인권1 -진행: 김도현 -발표: 박옥순/김치훈/좌혜경	식사(아침 겸 점심^^)
10:00~11:00			[마무리 마당] 장애민중 선언문 채택
11:00~12:00			
(오후) 12:00~1:00	등록 및 접수	점심 식사	사진촬영 후 해산
1:00~2:00		[제2마당]문제의 제기: MB정부와 장애인 인권2 -진행: 노금호 -강연: 진중권/류은숙	투쟁의 현장으로!
2:00~3:00	[사전 마당] 반성폭력 내규 교육 -진행: 미소		
3:00~4:00			
4:00~5:00	[제2마당]실천 전략 만들기: MB정부와 장애인 인권3 -진행: 김기룡		
5:00~6:00		저녁 식사	
6:00~7:00	[O/T] 몸 풀기, 마음 풀기 -진행: 김진영	저녁 식사	
7:00~8:00			
8:00~9:00	[제1마당] 소통하기 상반기 활동 신문 1면 만들기 -진행: 남병준	[제3마당] 어울림마당 즐거운 문화제!	
9:00~10:00			
10:00~11:00		뒤풀이	
11:00~12:00	취침		

반성폭력 내규 교육

사전 마당

- 진행 : 미소(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운동 사회의 성평등과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

제정 : 2007년 8월 17일

1차 개정 : 2009년 2월 14일

전 문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지향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과 폭력에 저항한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으로 이분화된 성별구분과 이성애 중심의 성별위계로 인한 가부장제 사회를 반대하며, 성(sex, gender)에 기반한 언어·육체·정신·환경적 폭력 행위 또한 반대한다. 특히 운동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성차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 활동가들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일, 지위 등을 기능적으로 분배하거나 배치하지 않는다.

- 성폭력은 성별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를 말하며,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성차별은 성별, 성적지향을 이유로 사회·정치·문화·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구별하고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운동 내에서의 성폭력과 성차별의 문제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궁극적으로 성평등 사회를 지향한다.

-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단체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장애로 인해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도록 해서도 안된다. 또한 성차별과 성폭력의 가해자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묵인하거나 옹호하지 않아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차별의 문제와 성폭력, 성차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위해 민감하고 신중한 판단해나가야 한다.

- 성에 기반한 차별 및 폭력 행위가 없는 성평등 세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성에 기반한 차별 및 폭력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또한 모든 단체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올바른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모든 단체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위 모든 것들을 일상의 활동공간에서 늘 고민하고 민감성을 갖고 실천해 나가며, 이를 위해 각고의 노력과 항상 긴장하는 자세로 아래의 내규를 지킨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과 지위)

① 이 내규의 명칭은 ‘장애인운동 사회의 성평등과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로 한다. 그 근거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며, 본 내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반성폭력위원회 회의 운용지침이다.

② 반성폭력위원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앙운영위원회 직속기구이며, 본 위원회의 활동은 조직 내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다.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장애인운동 사회내의 성차별 및 성폭력 문제를 피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결해나가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모든 단체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을 교육해, 장애인운동 사회의 성평등 실현과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나가기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내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모든 단체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에 적용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제안하는 연대단체와 연대활동에는 준용해서 적용한다.

② 이 내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외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가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 (반성폭력위원회의 기능)

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반성폭력위원회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역할과 업무를 통해 장애인운동 사회 내의 성평등의 실현과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1. 성차별 및 성폭력 사안에 대한 피해자를 상담한다.

2. 성차별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사건에 개입한다.

3. 피해자 치료에 대한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4. 모든 단체회원,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대중적인 교육, 성교육 등을 실시한다.

5. 기타 이 내규의 목적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

제2장 위원회 구성과 역할

제5조 (반성폭력위원회)

- ①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과반수의 위원은 여성으로 한다. 단, 위원 중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지역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자격 : 반성폭력 운동 등 관련 활동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성폭력 관련 교육을 최소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으로 한다.
- ③ 권한 : 성차별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직권조사의 권한을 가지며, 가해자 징계에 대한 내용을 중앙운영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징계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운영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⑤ 기능 : 위원회는 상시적 활동기구이며, 사건 접수 및 사건 성립 여부를 판단해 진상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사건해결 과정에서 필요시 대책위원회를 발의, 구성한다.

제6조 (대책위원회)

- ① 구성 : 성폭력 사건이 인지되고 난 후, 반성폭력위원회 1인 이상이 대책위원회 구성을 발의할 수 있다.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단, 사안에 따라 외부단체와 연대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10일 이내에 구성한다.
2. 발의 직후,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반성폭력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고 어느 누구도 가해자를 개별적으로 만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3. 대책위원회 위원은 반성폭력위원회 위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피해자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하며, 가해자가 속한 단체의 대표자 및 개인회원은 참여할 수 없다.
4. 대책위원회는 그 구성 상황을 활동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피해자는 특정 대책위원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5.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해 대책위원회는 회의 장소 등을 정한다.
- ② 기능 :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대책위원회 업무를 전개해 나간다.

1. 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의 동의아래 사건 해결을 위한 모든 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한다.
2. 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를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중지시켜야 하며, 사건 해결을 위한 전 과정을 집행한다.
3. 대책위원회는 사건 진행 모두를 기록하고, 보고서로 작성할 의무가 있다.
4. 대책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징계위원회에 제안한다.
5. 공동해결을 위한 외부 연대 대책위가 구성되면, 대책위원회는 모든 권한을 위임한 대책위원을 파견한다.
6. 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해소할 수 있으며, 해소 이후라도 필요한 경우 재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징계위원회)

- ① 구성 : 반성폭력위원회 및 대책위원회에서 가해자의 징계수위를 제안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한다. 단, 징계위원회에 반성폭력위원회, 대책위원회 위원의 약간 명을 원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가해자가 속한 단체 및 관련 단체의 중앙운영위원은 징계위원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 ② 권한 :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고, 실행한다. 또한 징계결정 이후에 피해자 및 반성폭력위원회의 재심의 요청이 있을시 이에 대한 기각 및 재심의 판단을 한다.

제8조 (징계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사항)

- ① 징계의 종류는 공개 사과, 경고, 노동봉사, 3개월 이하의 정직, 제명, 외부 공개 등으로 하며, 가해자의 장애유무, 성별 및 성적 지향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② 가해자는 징계위원회가 지시하는 내부 또는 외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동일한 가해자가 또 다시 성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현 사건에 대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행위를 할 경우 등에는 가중처벌을 적용한다.

제3장 사건성립 및 해결원칙

제9조 (정의)

- ① 성차별주의라 함은 성별, 성적지향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제도와 그 행위이고, 성차별은 성별

에 근거하여 사람을 불평등하게 구별하고 취급하는 행위이다. 성차별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말하며,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이 원치 않으며, 개인에게 성에 기반해 가해지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침해 및 폭력을 의미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성폭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강간 :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포함한다.
2. 성추행 : 동의하지 않은 신체적인 접촉을 포함한다.
3. 성희롱 : 비언어적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4. 데이트 강간
5. 스토킹
6. 영상물 혹은 매체를 통한 성폭력
7. 술따르기 강요
8. 언어폭력
9. 기타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성적 행위에 일체

③ 성역할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고유의 사회적인 기능을 하고 이는 태생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하는데, 남성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역할은 생물학적인 여성과 남성으로 분리될 것이 아니라 심리적, 정치적, 사회적인 근거로 개인이 선택하거나 사회가 할당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피해자중심주의라 함은 사건조사 및 해결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0조 (피해자의 존중 및 비밀유지의 의무)

- 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은 가장 존중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 ② 피해자는 사건을 공개적으로 처리할지, 비공개적으로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③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자신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을 권리
 2.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를 즉각 요구할 권리
 3. 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위원 이외의 활동가를 대책위원으로 추천할 권리

4. 자신의 사건에 한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5. 불필요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
6.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의심받지 않을 권리
7. 사건해결의 전 과정을 알 권리
8. 특별휴가 등을 요구할 권리
9. 자신의 활동을 유지하거나, 활동 재개를 보장받을 권리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속한 단체회원은 누구든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12조 (성폭력 사건 해결의 원칙)

- ①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란, 피해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인간으로서 자기의 존엄을 되찾는 것이다.
- ② 반성폭력위원회 및 사건을 인지한 단체회원은 사건이 발생했을 시 가해자를 격리하고, 피해자의 활동과 상처치유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건의 진상조사 시에는 사건의 진실과 명확성을 파악하고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가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또한 대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가해자가 속한 회원단체의 구성원은 참여할 수 없다.
- ③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모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지지해야 하며, 피해자의 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객관성을 빙자한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반성폭력 활동에 임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을 절대로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를 즉각 중지시키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연대망을 형성해야 한다.
- ④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치유와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해 사건을 해결한다.

제13조 (사건의 신고 및 성립)

- ①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그 사람의 대리인이나 목격자 등 제3자가 피해사실을 반성폭력위원회에 신고하면, 반성폭력위원회는 사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사건성립의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
 1. 성폭력 사건으로 판단될 때까지 반성폭력위원회는 신고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2. 제3자는 반드시 피해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반성폭력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피해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동의는 없으나 성폭력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협박, 폭행의 위협이 있

을 경우 사건이 성립될 수 있다.

3. 신고한 사람은 대책위원 중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정해진 대책위원 이외의 활동가(회원)를 대책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이 밖에 피해자의 요구나 신고자가 없을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에 한해서는 반성폭력위원회의 직권으로 진상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한 내용에 따라 사건 공개수위는 피해자 보호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다.

1. 사건이 중대하고 명백한 정황이 파악될 경우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에 위해를 가할 경우
3.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상황이 판단되거나 그 이유가 명백한 경우

제14조 (적용시한)

- ① 신고 시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 ② 본 내규의 제정·공포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미해결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지속적인 피해 상황에 있거나, 사건의 당사자들이 본 내규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 (사건의 진행)

- ① 반성폭력위원회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사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대책위원을 배제하거나 위촉하여 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 ② 비공개시, 대책위원회에 의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가해자 교육 등의 징계가 이루어진다. 비공개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단 수사가 진행되었을 때 피해자가 공개될 수 있는 문제 등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공개시, 대책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진상과 징계결과 및 징계수위에 대한 판단근거를 징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 내용에 대한 이행을 감시한다.
- ④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사건 공개 시에만 이루어지며, 징계의 수위는 반성폭력위원회 및 대책위원회가 제안하고,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단 반성폭력위원회 및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사건의 입증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

제16조 (사건의 종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과 피해자의 인권회복 등 사후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피해자 및 반성폭력위원회, 대책위원회는 사건의 종결을 결정한다.

제17조 (2차 가해)

- ① 성폭력 가해자에 동조하는 발언, 행위,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받아 반성폭력위원회에 신고하면, 그 사건은 별도의 사건으로 다룬다.
- ② 피해자가 원하여 사건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는 중 이를 공개하는 모든 활동가의 경우, 가해자에 의한 보복 행위 등도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4장 조직 및 회원의 의무

제18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각 지역장차연 단체회원의 의무)

- 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각 지역장차연 단체회원은 성평등을 이룩하고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며,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②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각 지역장차연 단체회원은 성교육 및 반성폭력에 필요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19조 (모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의 의무)

- ① 모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반성폭력위원회 및 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사건 해결의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② 모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공개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징계 결과에 대해 공유할 의무가 있다.
- ③ 모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성과 관련된 언행을 각별히 유의한다.

제20조 (공동해결)

- 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모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이 관련되어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반성폭력위원회 및 대책위원회는 본 내규에 의거하여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단,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타 단체의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 ②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단체회원 내 공동해결 및 외부 단체와의 공동해결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제21조 (사건의 예방 및 교육)

- 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성차별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 2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반성폭력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무교육 및 반성폭력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단, 인정범위와 조건은 반성폭력위원회 의무교육지침에 따른다.)
- ② 교육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모든 단체회원에 속한 개인 및 개인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 전장연 각 지역장차연 보직을 맡은 회원은 연 1회 이상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단, 의무교육대상은 반성폭력위원회 의무교육지침에 따른다)
- ③ 중앙운영위원회, 전장연, 지역장차연 보직을 맡은 회원은 연 1회 이상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보직을 박탈한다.

부 칙

제1조 (내규 개정의 발의) 이 내규의 개정발의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2조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성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 성차별 행위 등을 처벌하는 사회법 내지 일반적인 사건해결 과정에 준하여 해결한다.

제3조 (시행) 본 내규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21조 제1항 연 2회 교육 프로그램 실시는 2008년부터 시행한다.

<반성폭력위원회 의무교육 지침>

1. 의무교육 대상자 : 중앙운영위원회, 전장연 지역장차연 보직을 맡은 회원
 - 1) 중앙운영위원회 : 지역장차연에서 인정하는 중앙운영위원인자 자.
 - 2) 전장연 지역장차연 보직을 맡은 회원
 - 전장연 중앙단위에서 활동비를 지급받는 활동가.
 - 지역장차연 사무국장급(지역차이가 다소 있음. 이는 매년 반성폭력위원회가 지역장차연과 소통후에 의무교육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2. 의무교육 이수시간 : 10시간
 - 여성주의 및 반성폭력운동 관련 : 4시간
 - 장애인운동사회내 성문화, 성평등 관련 : 3시간
 - 전장연 반성폭력위원회 내규 설명 : 2시간
 - 토론 및 기타 : 1시간
3. 교육방식 : 강의식
4. 교육일정 : 매년 7월, 9월 (년2회)
5. 교육 및 이수시간 인정범위
 - 1) 반성폭력위원회가 주관하는 의무교육 2회 중 1회 8시간이상 교육받은 자
 - 2) 반성폭력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
 - 교육내용을 사전에 반성폭력위원회에 알리고, 반성폭력위원회와 협의하고 세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시간을 정한다.
 - 반성폭력위원회에 미리 알리지 않고 교육을 받은 후에, 사후 인정승인을 요청할 경우는 의무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반성폭력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의무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사전공지와 사전협의의 방법은 교육주관처, 교육시기(일정), 교육내용(커리큘럼), 총 교육시간이 기록된 계획안을 제출한 후에 반성폭력위원회와 반드시 소통하고, 승인절차를 가진다.

<2009년 2차 장애인운동사회의 성평등 및 반성폭력 교육 공지>

- 교육일시 : 2009년 9월 17일
- 교육장소 :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 교육시간 : 오전 10시~ 오후 8시
- 교육비 : 만원(교재비)
- 문의 : 전장연 반성폭력위원회 / 010-8108-7709 미소
신청서는 wsadd@paran.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성폭력 교육 후 함께하기] 그래그래

[주제·목표]

- : 활동가대회를 성평등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 : 반성폭력 내부규약에 대한 교육이 끝난 후, 교육의 내용을 스스로 소화하기 위한 과정을 함께해본다.
- : 참가자들이 활동가대회를 성평등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향해야 할 가치들과 지양해야 할 가치들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 :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이, 평등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어떤 바람과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불편해하는 지를 소통하고 공감한다.

[준비물품]

- * 준비물 : 포스트잇(2가지 색상별로 각 200장), 필기도구(매직, 크레파스, 싸인펜 등), 테이프, 전지 (2*2=총 4장)

[진행방법]

■ 그래그래(총30분)

- ▶ 참가자들은 모둠별로 앉는다.
- ① 함께 활동가대회에 참여하면서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을 만드는 시간으로 한 명에게 두 개의 쪽지를 나눠주고 각각을 쓰도록 한다.
 - 바래(얻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가치)
 - 이건 아니잖아(이런 건 정말 싫어)
- ② 쓴 쪽지들은 진행자가 취합, 정리해서 한쪽 벽면에 부착한다.
- ③ 사회자는 참가자들이 어떤 것들을 바라고, 어떤 것들을 지양했으면 하는지 나온 내용들을 총 정리해서 말해준다. 독특한 의견이 나왔을 경우 참가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볼 수도 있다.

몸 풀기, 마음 풀기

오리엔테이션

- 진행 : 김진영(전장연 기획국장)

[몸풀기, 마음풀기] 나는 대단한~입니다

[주제·목표]

: 본격적인 활동가대회가 시작하기 전, 서로 긴장된 몸을 풀고 참가자들과의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져본다.

: 활동가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시간을 갖는다.

[준비물품]

* 준비물 : 모듬별 쿠션 1개씩

[진행방법]

■ 나는 대단한~입니다

▶ 참가자들은 모듬별로 앉는다.

- ① 참가자가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등글게 서거나 앉는다.
- ② 참가자가 쿠션을 들고 있다가, “나는 대단히 —하는 00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난 후 소개 받고 싶은 참가자에게 쿠션을 던진다. 자신을 소개하는 꾸밈말은 하나일 수도 아니면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예> “ 나는 대단히 잡자는 걸 좋아하고, 대단히 바람을 좋아하고, 대단히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하는 00입니다.”

- ③ 공을 받은 참가자는 ②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또 다른 참가자들에게 쿠션을 던진다. 모든 참가자가 소개를 다 할 때까지 계속한다.

[몸풀기, 마음풀기] 새로 쓰는 이름 이야기

[주제·목표]

: 본격적인 활동가대회가 시작하기 전, 서로 긴장된 몸을 풀고 참가자들과의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져본다.

: 활동가대회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 불리고 싶은 ‘별칭’을 이름표에 써서 알린다.

: 각자의 별칭을 모아 꿰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다.

: 각자 다양한 색깔과 향기를 가진 참여자들의 별칭이 하나의 독특한 문장을 만들어 내듯이 2박 3일간의 활동가대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소통한다.

[준비물품]

* 준비물 : 배포된 이름표, 모듬별 4절 색지 1장씩

[진행방법]

■ 새로 쓰는 이름 이야기

▶ 참가자들은 모듬별로 앉는다.

- ① 모듬을 구성한다. 참가자 자신이 불리고 싶은 이름(별칭, 이미 기존에 사용하던 별칭을 쓸 수 있다)을 만든 후 모듬 내에서 돌아가며 소개한다. (배포한 이름표에 쓰고, 꾸민 다음 소개한다) (5분)
- ② 소개가 끝나면 모듬 참가자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구성한다. 이름을 지명, 물건, 꾸밈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5분)

<예>

* 모듬 구성원의 이름 : 아침, 석호, 바람, 자유로운 영혼, 미나, 파란들

* 이야기 꾸미기 : ‘석호’는 ‘아침’에 ‘바람’을 맞으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미나’를 만나러 ‘파란들’을 가로질러 왔다.

- ③ 이야기가 완성되면 모듬별 발표자가 자신의 모듬 이야기를 발표한다.(10분)

소통하기:
상반기 활동 신문
1면 만들기

제1마당

- 진행 : 남병준(전장연 교육국장)

상반기 활동신문 1면 만들기

[주제·목표]

- : 전장연의 상반기 활동소식을 알린다.
- : 각 지역, 개인활동가, 학생활동가들이 상반기 활동보고 신문을 만들어 봄으로써 상반기 활동을 정리·소화해본다.
- : 각 모둠에서 발표한 상반기 활동보고 신문을 전체참가자가 공유함으로써 각 지역, 개인 활동가별, 학생활동가별 활동들을 공유한다.
- : 상반기 활동에서 성과나 아쉬운 점들을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준비물품]

전장연 상반기 활동보고 신문(예시안), 신문 틀(모듬별 2장씩 총 28~30장), 크레파스, 매직, 가위, 풀, 색종이 등

[진행방법]

■ 소통하기[활동신문 만들기](총 2시간 30분)

▶ 참가자들은 지역별로 앉는다.

- ① 전장연에서 먼저 전장연의 상반기 활동보고 신문을 발표한다.
- ② 지역별, 개인활동가별, 학생단체별 상반기 활동보고 신문을 제작한다.
- ③ 각자 제작한 신문을 발표한다.

[구성 예시]

<p>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p> <p>투쟁신문</p>		<p>편집인 : 전장연</p> <p>발행일 : 2008.8.1</p>
<p>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p> <p>드디어 출범하다!!!</p> <p>-13개 지역이 모여, 드디어 출범!!</p> <p>2007년 8월 ○○</p>		<p>자유로 정거투쟁!!</p> <p>시설로부터의 자유!!</p> <p>장애인차별금지법</p> <p>시행 100일!!</p> <p>2008년 7월 30일</p> <p>차별 진정이 줄을 잇다..</p> <p>화서역 리프트 추락참사</p> <p>화서역, 장애인 이동권 부실...여전...</p>
<p>시설장애인 투쟁의 깃발을 꽂다!!!</p> <p>서울시청 앞 50일 천막농성...</p>		
<p>광고</p> <p>웰컴투 호사별2 개봉박두!!</p> <p>11월 coming soon!!!</p>	<p>속보</p> <p>활동보조 예산확보, 장애인 가족지원 체계 마련! 복지부 전격 수용!!</p> <p>복지부 장관 드디어 수용결정... 동지들.. 수고하셨습니다.^^</p> <p>이제 청와대로! GO~GO~</p>	

장애인 인권의 현실: MB정부와 장애인 인권1

제2마당

- 진행 : 김도현(전장연 정책실장)
- 주제발표 : 자유권을 중심으로 / 박옥순(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장애아동과 가족의 권리를 중심으로 / 김치훈(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
생존·생활권을 중심으로 / 좌혜경(진보신당 정책연구원)

자유권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 살펴보기

박옥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들어가기

자유권을 중심으로 장애 인권을 얘기해보자는 진영(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의 제안을 받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된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에서 자유권만을 뚝 떼어내어 얘기한다는 것이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거절할 시간도 놓치고,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 주제로 발제할 사람이 없다는 말에 나이도 많고, 경력도 제법 일추 되니, 발제할 사람을 찾기보다는 쉽게 내게 부탁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도 모르는 자유권이니, 여러 자료들을 찾아내어 자유권에 대해 나도 공부하고, 전국장애인활동가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함께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본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인권연구소 창 의 류은숙 상임활동가가 1년 6개월여(2007년 -2008년) 넘게 제가 속해있는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의 상임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세미나를 진행했기에, 이를 나누고도 싶었습니다.

간단하게 역사성에 기초한 자유권을 짚어보고,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여 자유권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부족하지만, 향후 다른 분의 기지와 현장경험과 학습으로 좀 더 보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들다리 건너듯 자유권 짚어보기

자유권은 흔히 시민적·정치적 권리라 하여 신체의 자유, 정치의 자유, 종교·양심의 자유, 의사표시 및 언론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 등 시민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과 국가 간의 권리 개념을 엮어내는 자유권은 모든 부문과 영역에서의 국가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 3조부터 21조까지는 생명권, 공정한 재판, 언론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시민·정치적 권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세대는 사회권, 즉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라 하고, 환경과 연대권리를 제 3세대 권리라 하지요. 그와 관련하여 여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유권을 1세대

권리라 하여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그 개념이 제기되었습니다.

과거 봉건시대에 왕에게 세금으로 재산을 바치고, 전쟁 중에는 군사를 대주는 역할을 하던 봉건영주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왕을 위해 이러저러한 모든 것들을 바쳐가며 충성을 해야 하는지?"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내 재산과 내 농노들만 있으면, 내 자신의 안위와 가족의 평안을 도모하는데, 굳이 왕에게 충성을 바쳐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에도 왕에게 완전 결별을 선언할 수 없었던 봉건영주들은 서로가 힘을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단체행동(?)'을 한 것이지요. 봉건영주들은 왕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왕이시여! 성은에 망극하여이다. 우리들은 모두 세금을 많이 내고, 왕께서 전쟁을 하는 중에 군사를 내주는 지방 부자들입니다. 왕께서 언제든지 우리 재산과 군사를 사용하시되, 내 땅과 내 부하들을 내 것으로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법률로서 이를 인정했을 때야 만이 왕께 더욱 충성을 하겠나이다" 라고 청했습니다. 왕은 속으로는 '내 땅 안에서 먹고 살고 있는 것들이...'하는 껄스민 생각이 들었지만, 지역부자들이 세금과 군사를 내어주지 않으면 왕권을 지킬 수 없으니, "그리 하여라"라고 말했지요. 소위 인권 중에 가장 먼저 생겨난 권리 항목이 '재산권'이고, 현대에서도 최고로 발달한 권리 항목이 '재산권'인 이유가 그것이겠지요.

봉건영주의 '딴 생각'

그러나 이런 결과는 일파만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자유' 또는 '권리'는 사소한 것 같지만 다른 영역과 부문으로 퍼져갔지요.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인권 개념 중에 종교 등 사상과 양심의 자유 권리가 생겨났지요. 권력을 쥐고 있는 봉건영주들은 '자신감'이 생긴 것이지요. 먼저 종교의 자유 개념이 왕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부패와 권력의 상징인 종교는 저항해야 할 상징이었고, 무엇보다도 교회에 무저항적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지방부자들의 입장에서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종교의 자유를 외쳐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정치적인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권력과 부, 즉 황금을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왕가의 자손은 따로 있고, 그로 인해 대대손손 왕가의 후예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중세 봉건의 지역 토호들은 '나도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선거를 통해서 왕을 선출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지요. 이미 부와 온갖 권력을 가진 봉건영주들의 거센 요구에 저항할 힘이 없던 왕들은 하나둘 동의하기에 이릅니다. 말하자면 지역의 부호들이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동시에 갖게 된 것입니다. 농노와 여성들 등 모든 인민이 가진 정치적 권리가 아닙니다.

결국 국왕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정부 형태를 생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서 자유

권의 인권 개념이 서서히 만들어져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진다'는 봉건영주들의 인권에 관한 주장은 그 주체를 봉건영주로 하였으나, '모든 인간은...'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프랑스혁명과 미국독립선언 등에 기초한 전 세계적인 인권의 화두가 1948년 세계인권선언으로 그 인권 개념이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제 권리 협약이 만들어지면서 세계인권선언은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각 국의 의무성을 부과하는 법률들이 서서히 그 기초를 제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다양한 인권 항목은 당사자에 의해 무수히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니, 인권이 역동적이고 역사적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한 자유권(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기초한 장애인권리]

세계인권선언
■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금지(2조)
■ 생명권, 신체자유와 안전(3조)
■ 노예 및 예속상태금지(4조)
■ 고문, 모욕적인 취급금지(5조)
■ 법 앞의 평등(6조) 보호(7조)
■ 효과적 인권 구제(8조)
■ 자의적인 체포, 구금, 형벌금지(9조)
■ 형사상의 평등권(10-11조)
■ 프라이버시권리(12조)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B 규약)
차별금지(3조, 22조 1항, 26조)
생명권 및 사형제도(6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9조)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금지(7조) 강제노동금지(8조) 인신구속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10조) 법 앞의 평등(26조)
제14조 (공정한 재판) 제15조 (형법불소급의 원칙)
주거, 사생활, 통신의 자유(17조)

국제 장애인권리협약
평등 및 비차별(5조) 생명권(10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14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16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차별로부터의 자유(15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16조) 평등 및 비차별(5조) 법 앞의 평등(12조) 평등 및 비차별(5조)
사법에 대한 접근(13조) 개인의 존엄성 보호(17조) 사생활의 존중(22조)

한국사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인권리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차법 - 시설생활인 차별금지, 괴롭힘, 폭력의 금지
장차법 - 폭력의 금지, 괴롭힘의 금지
장차법과 상충 법률 존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불법체포 자백 강요 의사소통제한으로 형사상의 불이익 금지
장차법 - 사법과정의 차별금지
장차법 - 개인정보 차별금지 - 시설생활인 개인정보 공개 금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B 규약)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인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과 거주이전의 자유(13조) 타국인 보호, 국적권리(14조 15조) 혼인, 가정의 구성할 권리(16조) 재산권(17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18조) 의견 및 표현의 자유(19조) 집회 결사의 자유(20조) 참정권(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권, 거주이전의 자유(12조) 외국인의 추방(13조) 가정의 보호, 혼인, 이혼(23조) 양심, 종교의 자유(18조) 표현의 자유(19조) 결사의 자유(22조) 선거권, 피선거권(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근성(9조) 개인의 이동성(20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18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23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16조)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21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편의증진법 이동보장예관법 장차법 - 이동 및 교통수단차별금지, 시설생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국적을 가질 권리 가족 생활권 · 결혼할 권리 · 강제불입 방지 · 가정폭력방지법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권리 기초생활수급권 장애수당 장차법-시설 생활인 종교 강요 차별금지 장차법 장애인 정당한 편의 차별금지 국내 관련법 장차법 - 투표권, 투표소 접근권

제5회 전국장애인운동활동가대회

차별금지와 신체의 자유

세계인권선언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등의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별의 심각성을 잘 알기에 전 세계적으로 규정된 인권기준 또는 인권규범이라 하는 건 죄다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앞머리에 달고 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세계인권선언문의 차별금지조항에 사회적으로 가장 차별적 존재에 있는 '장애'를 뺐다고 야단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완성되는 그 시기에 장애인이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따라서 세계인권선언문을 정독하는 순간, 맥이 탁 풀립니다.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내용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자알 해석하여 각종 국제권리협약을 만들어내고, 각국의 관련 법률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행정 등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 거부 운동이 있습니다. 미미하나 권리구제 수단도 명시되어 있어, 잘 만 쓰면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 회복에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쓰이지 않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세계인권선언 제 3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생명권을 포함하여 신체의 자유나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극히 미약하기만 합니다. 수용시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시설장의 그저 사유물로 밖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듯합니다. 얼어죽이고, 가두어 죽이고, 배고파 죽이는 짓을 서슴치 않는 현실을 볼 때, 물리적으로 생명을 위협당할 뿐 아니라, 결핍에 의해서는 생명을 박탈당하는 것이 시설의 생활자입니다. 또한 길거리의 턱과 계단, 보도의 폭 등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늘 위협하고 있습니다. 식당의 계단 앞에서 배고픔을 호소하며 유서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 고 김순석씨의 비명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상태나 예속 상태 또는 매매금지에 관한 권리에 대해 세계인권선언 제 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시설 생활인은 몸과 정신의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단지 모두가 무조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일부 시설 생활인은 농사와 짐승 기르기 등 무보수로 노동을 하는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고, 더구나 가족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탈 시설은 그저 염원일 뿐, 형기 없는 감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시설과 정신병원 등을 오고가는 시설 생활인의 입장에서 자신도 모른 채, 매매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결국 무기력하고 자신의 권리에 무심할 수 있는 존재로 동화되어 가는 시설 생활인에 대해 쉽게 '시설 병' 또는 '시설 증후군'으로 매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유권을 기반으로 장애 인권을 살펴볼 때, 지속적으로 관심이 주목되는 조항은 5조. 어느 누구

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입니다. 정서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장애인은 무능력하고, 많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신체와 정신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호기심 어린 시선과 비하 언어,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의 차별경험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시선(87%)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동정과 시혜를 확산하게 합니다. 이는 차별 보다는 인권침해에 해당함에도 '괴롭힘의 금지'라는 명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롱, 비웃음, 경멸, 농담 등을 포함한 언어적·시각적인 행위를 통한 괴롭힘이 포함됩니다. 행위자의 의도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나 모멸감, 모욕, 불쾌감, 수치심을 경험하였다면 폭력으로 간주합니다.

법 앞의 평등, 그러나

모든 사람은 법 앞의 인간으로서 평등하고,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는다는 세계 인권 선언 제 6조와 7조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의 권리와는 무관하게 느껴집니다. 최저임금제 적용을 제외하고, 상법 732조 장애로 인한 보험 거부 등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간접차별의 금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한, 장애인은 법 앞의 평등과 차별 없는 법의 평등한 보호로부터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권리를 구제받을 권리에 대해 세계인권선언 제 8조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 구제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련 법률들이 존재하나, 그 역할이 미미합니다. 이제 시작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직접적인 권리구제에 관해서는 지켜볼 일입니다. 나머지 관련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아울러 간접차별에 해당하는 많은 사항들이 지켜져야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체포와 구금, 형사상의 권리 등에 관해 9조에서 11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여러 형태로 그 권리보장을 위한 내용들이 있으나, 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됨을 전제로 권리 보장을 점칠 수 있으나, 법무부가 새로운 사법절차를 만들기 싫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두 달여 간 수감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지적장애인 지승환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란다 고지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고, 변호사 등 진술보조인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아니오'라고 자신의 자필 사인이 있는 진술서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승환씨가 과연 미란다 고지, 또는 변호인 등 진술보조인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했느냐는 장애계의 의견과는 달리, 경찰은 지승환씨의 명확한 답변을 근거로 진술보조인을 배치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지 않아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화간범'으로 몰려 감옥살이를 한

청각여성장애인, 경찰이 직접 진술서를 쓰고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아끌어 싸인하게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실제적인 진술서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한 시각장애인 등의 슬한 예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었을 때라야, 비로소 사법절차 상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라이버시와 거주 이전의 자유

흔히 시설생활인의 인권 문제를 얘기할 때, 프라이버시권과 거주이전의 자유의 권리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이는 비단 시설 생활인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에게도 해당되지요. 그럼에도 특히 시설 생활인에게 주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프라이버시, 즉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세계인권선언 제 12조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 12조와 13조를 읽어 내려가는 사이에 모두가 알게 된 사실은 바로 시설 생활인을 뚫뚫 묶어두는 현재의 시설의 모습일 것입니다.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30여명이 함께 숙식을 하는 방 안에서는 그 누구도 프라이버시권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방 안에서 옷을 갈아 입을 형편도 안 되지만, 사사로운 전화 통화조차도 어려운 공간이 바로 시설 방입니다. 또한 부모와 보호자 또는 시설 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외출 등 시설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이라 하지만, 정작 그 권리를 제대로 알고 실현해내기 위한 정보조차도 제대로 접근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설장과 부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휴대폰도 빼앗긴 체, 시설 밖의 대로변까지 700미터 거리를 야밤에 홀로 2시간여를 기어서 탈출한 한 시설 생활인의 도전과 용기는 가히 신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고, 프라이버시 권리를 누리고 싶고, 자유롭게 거주 이전을 하고 싶은 한 장애여성의 피눈물의 탈출 역정은 역사 속에서 기리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프라이버시권에 관해 류은숙(2008)은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 정보 프라이버시; 신용정보, 의료기록, 정부 기록 등 개인 정보의 수집과 취급을 다스리는 규범의 수립과 관련하여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생산·유통·활용·보존·공표 등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가질 권리

- * 신체 프라이버시; 사람들의 신체적 자아를 유전자 검사, 약물 검사, 신체 수색 등 침해적인 절차로부터 보호
- *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 감시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통해 자신의 사상과 견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 다른 자유의 기본전제가 되는 '권리를 위한 권리'. 우편, 전화, 이메일, 기타 형태의 통신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포괄
- * 영역 프라이버시; 가정, 작업장 또는 공공장소 등 기타 환경에 대한 침입을 제한하는 것

한편 한국 사회의 장애인은 미국 비자를 받기가 하늘에 있는 별 따기입니다. 장애인 환경이 그나마 나은 미국에서의 영구 체류를 염려한 미국 대사관에서 장애인의 비자 발급을 늘 거부합니다. 이 역시 장애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는 행태가 되겠지요. 또한 외국인 장애인이 한국의 장애인 복지 혜택을 누릴 권리 역시 하늘에 있는 별 따기입니다. 한정된 복지 수급량으로 외국인 장애인에게 까지 복지혜택을 줄 수 없다는 정부 태도 때문에 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정책을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에 재미있는 권리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혼인과 가정을 가질 권리를 말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 16조는 성년에 이른 남녀의 혼인할 권리,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 결혼이 성립되고,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단위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없을 것과 유전 등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친정 부모와 시댁부모와 가족 등은 장애인의 결혼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정과 가족 안에서 폭력과 차별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선언에도 나왔듯이 모든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과 가족 안에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 자체를 갖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삶의 존엄성 자체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있으나,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성폭력 특별법이 있으나, 장애인 가정 안으로 스며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보편적 인권'이라는 조건을 요청하는 재산권

그리고 제 17조는 재산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인권 항목의 최고령으로 다른 인권을 생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재산권은 아마도 타 영역에 비해 상당히 발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강남의 땅 부자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재산권은 그 개념이 같은가? 또한 노동을 통한 소득과 불로 소득이 같은 인권으로 논의되어야 하는가 라는 쟁점도 있습니다. 타인의 인격과 자유를 해치고, 대다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압박하는 재산권이라면 인권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인권 전문가들은 인간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존중이라는 재산권의 본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고, 현실에서 재산의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폐해가 심각하다면 그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들은 재산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 권리의 보장 자체만으로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에 어떠한 피해자 부담도 주지 않는다는 모든 인권에 보편적인 속성을 가진 것이 바로 재산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에게 있어 재산권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장 가족이 굶어죽게 생겼는데, 돈 잘 버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또한 장애를 이유로 일 꺼리도 주지 않으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비가 재산권에 해당될까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장애를 이유로 주지 않는다는 상담이 속출하는데 이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정신적 장애의 특성을 활용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에게 장애인을 차별한다고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해 18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는 19조,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20조), 참정권에 대해서는 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권리와 연결하여 언뜻 생각나는 것은 새벽기도 등 시설 생활인의 종교 강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화, 문자, 점자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가 있어야 장애인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집회 등을 하는 사람들 중 단일 영역으로는 단연 둘째라면 서러워 할 만큼 집회 등 기자회견을 많이 개최하는 곳이 장애 인권 영역일 것입니다. 최근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들기만 해도 불법 집회로 간주하여 벌금을 때리는 형국이어서,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향한 집회 결사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 이후에 진행된 선거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건수가 많은 것을 보면, 법률이 없을 때와 특별히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설 내에서 부재자투표를 빌미로 시설 생활

인을 대신하여 시설관리자가 투표하는 예, 몇 번을 찍어야 한다고 교육하고 투표하는 시설 등이 회자되고 있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는 장애인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나오기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여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인권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제대로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이해하고 본고를 작성했는지 걱정되고, 그저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권 보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설입니다. 세계인권선언 2조에서 21조에 이르기까지 어느 조항 하나 비껴가지 않는 실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설은 폭력, 성폭력, 인권유린, 비민주적 운영 등의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시설 그 자체만으로도 인권 침해 공간임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0년,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은 인권이라는 화두를 둘러싸고, 자유권, 사회권, 제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 등 여러 담론들이 퍼져가며, '인권'이라는 작은 씨앗 하나 생장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 독립성과 축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인력 감축, 언론탁탈, 국정원법,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 등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1년 반, 그 작은 씨앗조차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고 있습니다. 담론이 취약한 장애인 인권의 경우, 그 작은 씨앗에 몸을 실고, 여러 형태의 흙씨가 되어 장애인 인권 담론을 열어가야 할 처지이나, 이 역시 그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후퇴하는 장애인 인권의 끝자락을 끌어올리기 위한 몸부림, 즉 장애인 인권 담론을 생산해야 할 그 시간에 오히려 몸을 무기로 한 기본권 쟁취를 향한 투쟁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할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전국장애인활동가대회가 열리는 이 시간에 자유권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인권을 살펴볼 시간이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과 함께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유권에 관한 담론이 상당부분 사회권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나, 자유권이라는 화두로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짧은 시간 살펴보면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음을 마음으로 몸으로 느끼는 시간입니다. 줄고에 지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도 이런 기회를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해놓고 보니, 더욱 초라하게만 여겨집니다. 넘어야 할 산과 물살을 헤치고 건너야 할 강이 많겠지만, 한 걸음씩 가다보면 어느새 다다르게 될 그 희망의 지점을 향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추진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장애아동과 가족의 권리

김치훈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

1. 아동기와 장애: 개념적 접근

장애아동과 가족의 권리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아동기의 장애에 대한 개념적인 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담론전쟁”에서 개인적/의학적 모델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사회적 모델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요즘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문제’라는 인식은 장애인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모든 사회적 기제들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에 논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장애인의 권리확보는 곧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일로 인식되고 있지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바로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기반한 장애인 권리확보의 교두보를 설치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장애에 대한 “담론전쟁”의 종료를 선언하고 사회적 모델이라는 하나의 지도 원리로 뭉쳐서 모든 장애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진하면 되는 것일까요? 먼 훗날 장애인에 대한 모든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나면 장애문제는 완전히 소멸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최근 장애아동 부모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인 재활치료바우처 문제를 놓고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따라 어떤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제기하는 이유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철폐와 사회변혁의 논리적 도구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이 모델이 모든 장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일한 지도 원리로 수용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장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생애주기에 따라 그 중심이 옮겨지며 따라서 장애인의 권리를 개념화할 때에도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문제를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생애주기를 놓고 바라본다면 출생에서 영유아기까지의 장애는 개인적/의료적 모델에 그 중심이 쏠려있습니다. 이 시기의 장애에 대해 조기교육이라는 용어보다 조기

중재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도 치료적인 요구가 더욱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인이 이후가 되면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따른 차별철폐와 사회통합이 핵심적인 이념이 됩니다. 그 사이 즉, 영유아기와 성인기 사이의 학령기에는 개인적/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이 서로 각축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물론 성인기 쪽으로 갈수록 사회적 모델의 힘이 강해지고 개인적/의료적 모델은 약화됩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 및 영유아기	개인적/의료적 모델
학령전기(초등학교)	개인적/의료적 모델 > 사회적 모델
학령후기(중고등학교)	개인적/의료적 모델 < 사회적 모델
성인기	사회적 모델

장애의 지배담론이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도 생애주기에 따라 그 중심내용이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아동기만을 놓고 볼 때 영유아기, 특히 영아기의 장애아동에게 발달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의료적 혹은 치료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핵심적이라면, 유아기 이후 학령기의 장애아동에게는 교육받을 권리가 가장 중심이 될 것입니다.

생애주기라는 관점에서 장애인의 중심 권리를 바라볼 때 아동기의 장애는 가족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장애성인을 중심으로 본다면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지극히 당위적인 인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실상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장애아동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아동기에 있어서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아동의 자기결정권보다는 부모의 대리결정권에 의해 보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예를 들어 진단평가과정이나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과 실시에 부모의 참여를 법적으로 공식화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동기의 장애와 가족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장애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의 기초 사회단위인 가족을 보호해야 합니다. 성인기의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통한 사회통합이 대전제라고 한다면 아동기의 장애인에게는 가족생활을 통한 사회통합이 대전제가 됩니다. 성인기 장애인에게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있다면 아동기의 장애인에게는 “가족중심주의”가 개념적인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기의 장애의 문제를 교육의 문제로 축소시켜서 바라보는 경향이 이어져왔고 장애아동 가족의 문제는 장애담론 시장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단적으로 법률환경을 살펴보면 장애아동복지법은 성인 중심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아동복지법에서 장애아동은 배제되어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또한 장애아동의 가족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했지만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

한 지원은 그 필요성에 대한 선언에 머물러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까지 아동기의 장애가 성인기의 장애와는 또 다른 개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과 장애아동에 있어 가족이 갖는 의미 그리고 가족지원의 중요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이와 같은 전반적인 문제의식이 바로 현재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 “장애아동 및 가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의 밑바탕에 깔려있습니다.

그러면 가칭 “장애아동 및 가족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현재까지 만들어진 초안을 가지고 그 내용과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입법 추진 배경

1)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취약한 법적 토대

-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교육체계와 복지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체계는 1977년 제정되고 1994년에 전면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 이어 2007년에 새로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통해 적어도 법적인 토대는 꾸준히 다져지고 발전되어 왔음.
- 반면 복지체계는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등의 관련법률들이 있으나,
 - 아동기라는 생애주기에서 요구되는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육지원 등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 장애성인이나 일반아동을 중심으로 법체계가 구축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 그나마 규정되어 있는 복지지원들도 전달체계의 전체적인 연계성 없이 분산되어 개별사업의 형태로 시도되고 있음.

2)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아동

- 2008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장애아 무상보육지원 대상자 약 17,000 명 가운데 장애아전담시설에 약 6,000 여명(35%), 장애아통합시설에 약 3,500 여명(20%)이 재원 중이고, 나머지 7,500 여명(45%)은 일반보육시설에 재원하고 있음.
- 전체 장애아 무상보육대상자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사는 고사하고 장애아 전담교사조차 배치되지 않은 일반보육시설에서 장애아동에게 필수적인 특수교육적·복지적 지원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이는 근본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정책이 법적인 토대 위에서 수립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주무부처와 시·도의 보육사업지침에 의존하여 진행되어온 결과임.

3) 장애인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미비

○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보육시설과 학교, 복지관, 보건소, 병의원 등 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의 연계협력의 고리가 없는 운영의 비효율성과 복지지원에 있어 시장의 참여가 어려운 폐쇄적 구조에 있음.

○ 장애인 복지지원 체계가 보다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복지지원 제공기관들과 제공자들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적격성을 심의하여 지원의 내용을 결정한 후 장애인과 복지지원 제공자를 연결해주는 지역사회 서비스 중개기관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또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지원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복지와 관련된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복지지원의 공공성 담보를 전제로 사적 시장의 복지지원 제공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달체계의 수립이 시급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해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전달체계의 수립을 구상해볼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교육'과 '복지'를 주관하는 중앙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처 간의 협력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한 보육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지원의 연계업무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소화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4) 장애인 복지지원의 내용 부실

○ 장애인과 가족에게는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육지원, 여가지원 등을 포함한 매우 다양한 복지지원이 필요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가족지원 조항이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을 가족상담만으로 매우 협소하게 규정함에 따라 장애인 가족에게 필요한 장애인 돌봄지원과 일시적인 보호와 양육지원, 그리고 가족치료와 가족교육 및 가족훈련을 포함하는 다양한 가족지원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치료지원에 있어서도 장애인전담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애인 보육시설에 치료사 배치를 통한 치료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치료지원을 사적 시장에서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장애인영유아의 부모는 커다란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음.

○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고 '09년도의 경우 초등 1,2학년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13년도까지 모든 장애학생들에게 치료지원을 제공함. 치료지원의 제공시간 역시 1주 2시간으로 한정하여, 더 많은 치료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치료지원을 제공받아야 함.

○ '복지' 쪽에서는 '재활치료서비스바우처사업' 등을 통해 이미 현실적으로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학교에서 제공되는 치료서비스의 양이 장애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07년도부터 별도의 치료서비스 지원 환경을 보건복지가족부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 '재활치료서비스바우처사업'의 경우, 모든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장애인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치료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 장애아동의 문화생활 영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이를 포함시켜 지원을 공식화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육'과 '복지' 양 쪽에서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5) 장애인 복지지원의 낮은 질

○ 현재 보육시설에 배치되는 특수교사는 장애인 9명당 1명으로 유치원의 장애인 4명당 1명의 배치에 비해 특수교육의 지원의 열악하며, 보육시설 특수교사의 자격기준도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 이외에 특수교육관련 기본교과목(8과목16학점이상)을 충족한 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제공되는 특수교육의 질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통합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수가 평균 약 5명으로 2학년 정원인 6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보육시설에서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9명 미만을 보육하고 있음.

○ 이는 통합보육이 실제로 전문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보육교사가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통합보육의 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치료지원에 있어서도 취약한 전문인력 양성체계로 인해 국가공인의 자격검정이 가능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이외의 치료지원 분야서는 그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6) 장애인 및 보호자의 권리보장 미비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절차상의 권리가 현재 법적으로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적어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보장하는 보호자의 이의신청과 구제 절차에 상응하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함.

○ 또한 초중등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이 서비스 관정을 통해 복지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보호자와 함께 절차상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3. 입법추진 과정

○ 2005 ~ 2007년 '장애인보육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과 법안에 담아야 할 내용을 논의하는 회의가 20여 차례 개최되었음. 이 회의에는 전국장애인보육부모연합회 대표, 전국장애인보육시설협의회 법제위원, 보육관련 전문가(교수), 사회복지관련 전문가(교수), 보육시설 특수교사

등이 참여하였고, 그 결과 '장애아보육법안'의 초안을 만들어 냄

○ 2008년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논의참여와 함께 기존의 '장애아보육법안' 초안이 담고 있는 지원 대상 및 복지지원의 틀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고 법안의 새로운 내용을 담아낼 법제정 TFT를 구성하여 '장애아동 보육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초안을 성안함. 이 과정에서 10여 차례의 공식적·비공식적 회의를 거침.

○ 2009년 1월 한나당 윤석용 의원실의 주최로 '장애아보육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됨.

○ 2009년 4월 '장애아동보육복지지원법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시킴. 이 공동위원회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장애아동보육시설교사모임 등이 참여함.

○ 2009년 6월 17일 국회의원 윤석용 의원실과 장보법공동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장애아동 보육 및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제1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 제1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비판을 수용하여 법제위원회에서 법률의 명칭을 '장애아동 및 가족의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복지지원의 내용을 대폭 강화함.

○ 이후 치료지원 관련 전문가간담회 및 정부 관련부처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가능한 올해 안에 입법발의할 계획임.

4. 법률안의 주요내용

1)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 지원을 총망라하여 규정

○ 지원 대상자: 만 18세 이하의 장애아동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20세 이하를 포함)

○ 지원의 내용

- 장애아동의 보호: 학대 예방 및 방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장애아동 담당부서나 담당인력배치
- 장애아동수당: 장애에 따른 추가비용 보전.
- 의료지원: 치과치료를 포함한 의료비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재활의학과 설치 확대
- 치료지원: 무상의 보편적인 지원으로 규정.
- 집중치료지원: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많은 장애아동에 대해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치료지원 제공.
- 보육지원: 무상보육. 장애아동 4명당 1인의 특수교사, 장애아동 2명당 1인의 장애아동보육교사, 장애아동 8명당 1인의 치료지원 담당인력 배치
- 방과후 및 방학기간의 보육지원: 초중등학교 재학생 대상.

- 교육비지원: 초중등학교 재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지급

- 가족지원

* 돌봄지원: 가정 등에 인력을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일시적인 보호양육지원: 보호자의 장기입원이나 장기외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장애아동 양육을 위탁

* 가족치료, 가족교육 및 훈련: 장애아동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 취약가정 지원: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아동이 한 가정에 2인 이상인 경우, 한부모가족인 경우, 조손가정인 경우, 도서벽지 가정인 경우, 다문화가족인 경우 복지지원 우선제공 및 법률지원, 가정경제계획, 아동양육기술훈련, 가사지원 등의 필요한 지원제공.

- 이동지원: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 인력 제공

- 여가지원: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 및 지역사회활동 지원

- 보장구 및 보조공학서비스지원: 무상 제공 또는 대여

- 급식 및 영양지원: 결식 장애아동 대상

- 주거환경개선지원: 주거시설의 환경개선 및 편의증진을 위한 주택개선지원금 지급

- 전환서비스: 취학, 졸업 등의 원활한 전환과 복지지원 연속성 보장. 보육시설은 초등학교 취학 지도계획 수립 실시. 고등학교 졸업대상자에 대해 직업훈련, 지역사회생활훈련, 자기관리옹호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한 전환서비스계획 수립 실시

2) 장애아동 복지지원 전달체계 확립

○ 장애아동 복지지원센터 중심의 지역 복지서비스 중개체계 수립 : 조기발견, 서비스 판정, 서비스 연계,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자 등록관리

○ 사례관리제도의 도입: 장애아동 복지지원조정자를 장애아동지원센터에 배치하여 아래의 사례관리 업무 수행

- 복지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판정에 따른 절차의 진행
- 복지지원 내용의 적절한 구성을 위한 보호자 안내 및 조력
- 개인별지원팀의 구성 및 회의개최
- 개인별지원계획의 작성 및 관리
- 전환서비스계획의 작성 및 관리
-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례관리

○ 복지지원 시장의 활성화 및 공공성 확보: 다양한 아동·장애인복지시설이 복지지원 제공자로 참여가능. 복지시설 이외에 비영리·공익법인의 복지지원 제공기관도 참여가능

○ 바우처 제도의 도입: 부모의 서비스 선택권 확장, 복지지원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질 경쟁유도

○ 학교와의 서비스 연계: 장애아동지원센터는 학교와의 계약체결을 통해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에게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3) 보육 및 복지지원의 질 제고

-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시설요건 규정: 보육시설 평가인증 획득, 일정 요건 이상의 면적 확보, 편의시설 설치, 장애아동 보육시설 장의 자격소지, 장애아동 보육사업계획서의 제출
- 전문인력의 보육시설 배치 법제화: 장애아동 2명당 1명의 장애아동 보육교사, 장애아동 4명당 1명의 특수교사, 장애아동 8명당 1명의 치료사 배치
- 특수교사·장애아동 보육교사 및 복지지원 제공자의 전문성 및 자격요건 강화
 - 특수교사: 특수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유아특수교육 또는 초등특수교육 전공자,
 - 장애아동 보육교사: 특수교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보육교사 2급 이상
 - 치료사: 국가 자격 또는 국가공인민간자격 소지자
- 장애아동 보육시설 종사자 및 복지지원 제공자에 대한 보수교육 규정
- 개인별지원계획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행 명문화: 지원조정자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특수교사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장애아동 보육과정에 대한 지도: 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개별화교육 및 보육과정에 대한 장학지도

4)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권리보장

- 장애아동의 권리 명문화
- 장애아동 및 가족에 대한 차별금지 명문화
- 장애아동 및 가족의 개인정보 보호
- 서비스 판정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보호자의 참여 및 의견진술권 보장
- 보호자의 심사청구 범위 및 절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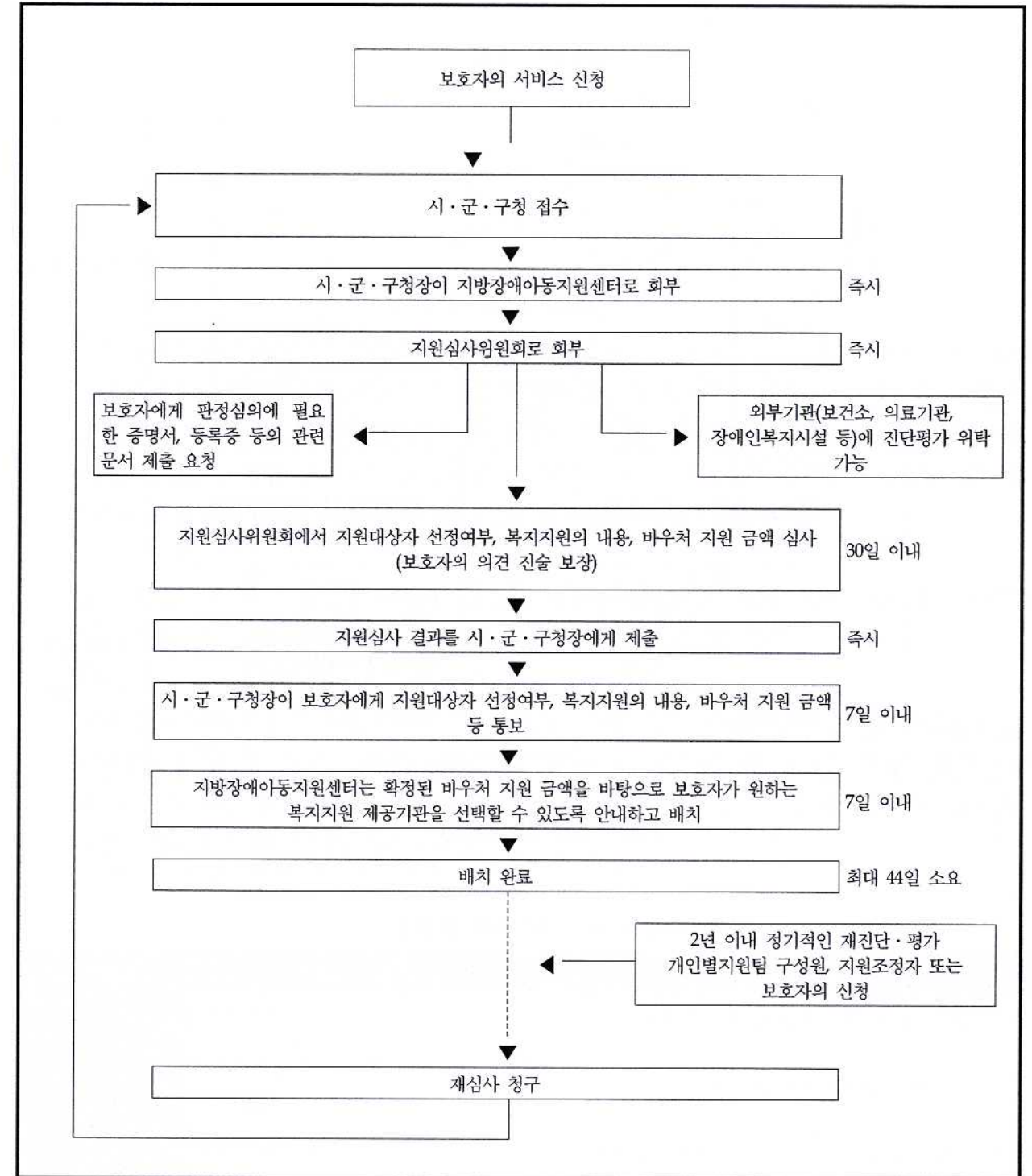
4. 법률안의 조문배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장애아동의 권리)
	제4조 (차별금지)
	제5조 (복지지원의 비용 등)
	제6조 (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8조 (중앙장애아동지원위원회)
	제9조 (지방장애아동지원위원회)
	제10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제11조 (지방장애아동지원센터)
	제12조 (장애아동지원조정자)
	제13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제14조 (각급학교와의 연계 및 협력)
	제15조 (장애아동지원실태조사 등)
	제16조 (장애아동지원 관련단체의 지원)
제2장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절차	제17조 (장애아동의 조기발견)
	제18조 (복지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판정)
	제19조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자의 중개)
	제20조 (복지지원 재심사)
	제21조 (개인별지원팀의 구성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작성)
	제22조 (장애아동 및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제3장 복지지원의 내용	제23조 (장애아동의 보호)
	제24조 (장애아동수당)
	제25조 (의료지원)
	제26조 (보장구 및 보조공학서비스 지원)
	제27조 (치료지원)
	제28조 (집중치료지원)
	제29조 (보육지원)
	제30조 (방과 후 및 방학기간의 보육지원)
	제31조 (교육비 지원)
	제32조 (가족지원)
	제33조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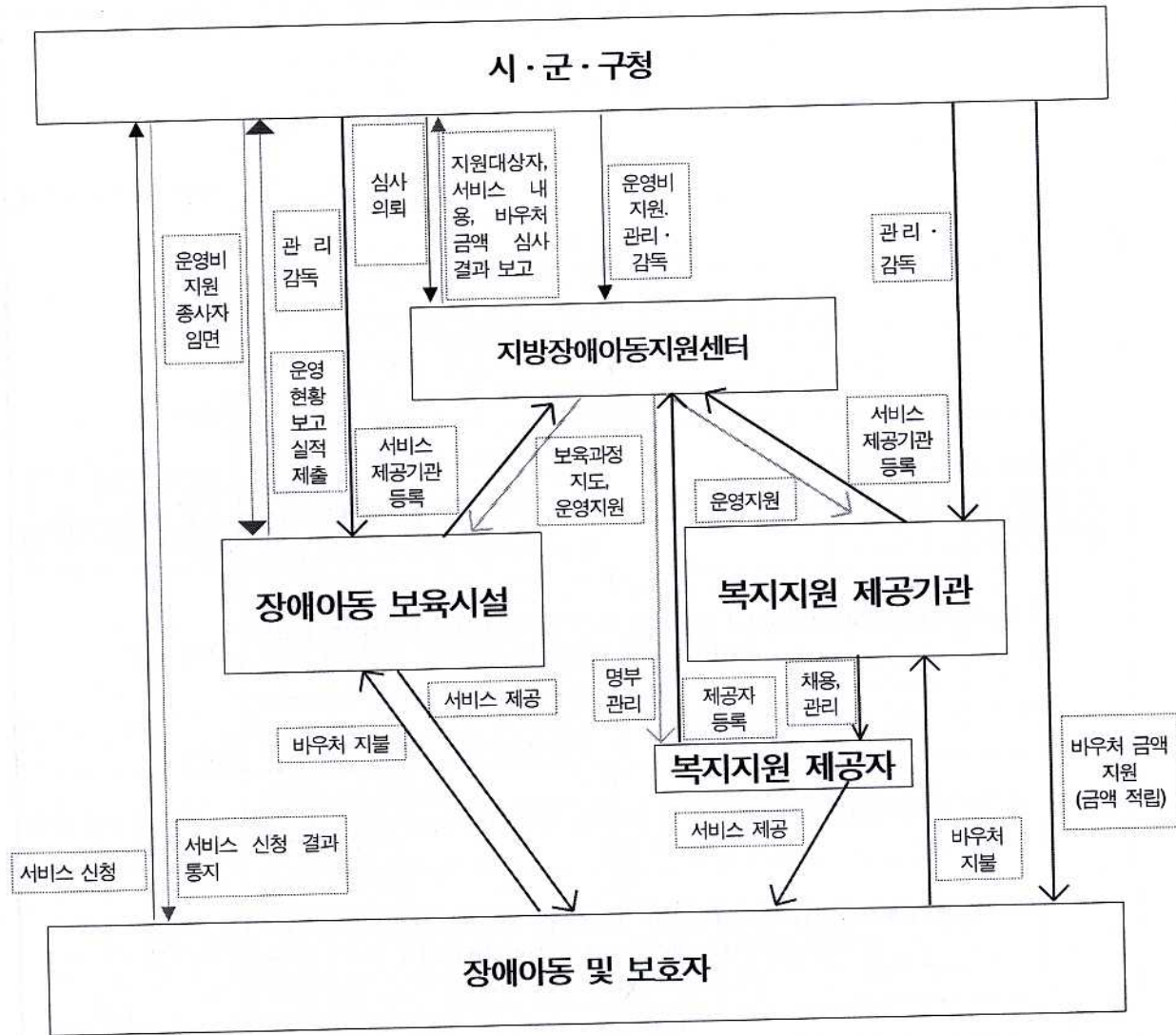
	제34조 (이동지원)
	제35조 (여가지원)
	제36조 (급식 및 영양지원)
	제37조 (주거환경개선지원)
	제38조 (전환서비스)
제4장 복지지원 제공기관	제39조 (복지지원 제공기관)
	제40조 (별도의 복지지원 제공기관)
	제41조 (장애아동 보육시설)
	제42조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지원증지)
제5장 복지지원 제공자	제43조 (복지지원 제공자)
	제44조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
	제45조 (특수교사의 자격)
	제46조 (장애아동 보육교사의 자격)
	제47조 (치료지원 인력의 자격)
	제48조 (기타 복지지원 제공자의 자격)
	제49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50조 (장애아동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 및 처우)
	제51조 (특수교사 및 장애아동 보육교사의 임무)
	제52조 (보수교육)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53조 (심사청구)
	제54조 (벌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장애아동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 (장애아동보육시설의 교사와 종사자의 고용승)
	제5조 (치료지원 인력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7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장애아보육관련 시설)
	제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5. 법안의 주요절차에 대한 흐름도

1) 서비스 제공 절차



2) 서비스 전달체계



장애인 생활권과 이명박 정부

좌혜경 |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0. 들어가면서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8월 「제3차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함. 이에 따르면, 장애인 정책 비전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1)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2)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3)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4) 장애통합적 접근으로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증진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58개 사업을 발표함.
- 그러나 발표된 58개 사업은 새롭다기보다는 기존에 발표된 정책들을 일부 보완하는 형태이며, 실효성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 현재 장애인 정책을 시행하는 부처 및 소관법률 역시 매우 다양함.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대표적이며, 이렇게 산재한 장애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 이행 감독 및 평가를 심의 조정하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음.

[관련 부처 및 소관 법률]

정부부처	소관 법률	법률 내용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전반에 관해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건축물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전반
	사회복지사업법	지역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 관해 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규정
	국민연금법 등	국민연금 전반(장애연금 규정)
	영유아보육법	보육 전반(장애영유아)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무고용 및 직업재활에 관한 규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최저임금 중 장애인 적용제의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노동자 및 재활에 관한 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교육 전반
	국토해양부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 전반(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
	법무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장애인 생활권'에 대한 발제는 위 사업에 대한 각각의 검토를 통해 그 한계와 과제를 밝혀야 하나,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며 명확하지 않고, 또한 발제자의 역량이 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따라서 본 발제문에서는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현황 및 실태를 간략히 알아 보고, 장애인 생활권 중에서도 소득보장 영역, 즉 고용정책 및 현금보장 정책에 주로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함.

1. 장애인 현황 및 실태

- 최근 실시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현황 및 실태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함.

1) 일반적 현황

○ 등록 현황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2008년 등록장애인이수가 2005년에 비해 43만 8천명이 늘어나 25.8%의 증가율을 보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등록장애인수	장애인추정수(출현율)
2005년(2/4분기)	1,699,329	2,148,686(4.59%)
2008년(1/4분기)	2,137,226	-
증가수	437,897	-
증가율	25.8	-

*자료: 복지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2009.

○ 성비

- 등록 현황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41.4%에 불과하고, 남성이 58.6%를 차지함. 우리나라 전체 인구 4,861만(2008년. 통계청)의 성별 현황을 볼 때 남성과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50:50인데 반해, 등록장애인 성비는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우선 가부장적인 한국 문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들 수 있을 것임. 장애인 등록은 의료 진단 등의 의료적·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며, 등록시 각종 복지서비스 등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형태임. 따라서 본인이 장애인으로 굳이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혹은 지원 서비스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등록절차를 모르는 경우 등이 존재함. 따라서 본인의 사회 활동, 가족 내에서의 관심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등록 장애인의 성별 편차가 보이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성 비]

(단위: %, 명)

구분	남성	여성	계	전국추정수
	58.6	41.4	100.0	2,137,226

*자료: 복지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2009.

○ 연령

- 등록장애인의 연령은 만 65세 이상 36.1%, 만 50~64세가 32.0%로 만 50세 이상이 68.1%에 달하고 있음. 반면, 지적장애는 만 0~17세 30.4%, 만 18세~29세 26.6% 등 만 50세 이하가 97.5%를 보여 주고 있으며, 자폐성 장애는 만 0~17세 미만이 78.5%를 보이는 등 만 50세 이하가 99.3%에 달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장애와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보여 주고 있음. 장애유형별로 지원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원 대책이 필요함.

[연령]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장 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 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만 0~17세	0.9	3.8	1.8	2.1	7.7	30.4	78.5	0.3	0.3	6.9	0.0	4.4	6.6	1.4	4.3	3.9
만 18~29세	2.1	1.9	1.6	1.7	5.8	26.6	18.5	6.0	4.6	3.5	0.8	1.8	8.6	0.6	11.3	4.0
만 30~39세	6.8	3.8	5.4	4.0	11.5	16.2	2.2	21.7	10.8	3.9	2.3	5.6	23.3	3.2	22.2	7.4
만 40~49세	19.4	8.0	11.9	9.6	17.8	15.5	0.1	35.2	21.7	9.1	7.0	26.5	22.2	6.9	36.2	16.7
만 50~64세	35.3	36.6	31.3	27.3	24.3	8.7	0.7	29.4	38.9	28.9	38.9	52.6	31.1	28.4	23.2	32.0
만 65세 이상	35.5	45.9	48.0	55.3	32.8	2.5	0.0	7.4	23.8	47.7	51.1	9.2	8.2	59.6	2.9	3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자료: 복지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2009.

○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이 25.9%, 경증장애인이 74.1%로 중증장애인이 전체의 25% 수준임.
- 특히, 중증장애 비중이 뇌병변 장애 55.0%, 지적장애 68.3%, 자폐성장애 82.5%, 정신장애 62.9%, 신장장애 83.5% 등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장애유형 중 가장 많은 등록비율을 보이는 지체장애는 중증장애 비중이 11.0%에 불과함. 중증장애인 대책에서도 뇌병변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장애유형별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 줌.

[장애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 장애
중증(1~2급)	11.0	55.0	18.1	25.0	10.1	68.3	82.5	62.9
경증(3~6급)	89.0	45.0	81.9	75.0	89.9	31.7	17.5	3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구분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중증(1~2급)	83.5	35.9	45.6	32.0	20.8	2.2	13.5	25.9
경증(3~6급)	16.5	64.1	54.4	68.0	79.2	97.8	86.5	7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자료: 복지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2009.

2) 경제 상태

○ 월평균 소득 및 지출

- 「2008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1만 9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 소득(2008년 기준 3,370천원)의 54.0% 수준임.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55만 5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지출(2008년 기준 2,290천원)의 67.9% 수준임.
- 그러나 이는 2005년에 비해 월평균 가구소득이 0.2%p 증가한 반면, 지출은 1.8%p 증가한 수치임. 오히려 가구 지출이 1.6%p 늘어난 상황으로, 장애인가구의 형편은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음.

[월 평균 총 가구 소득 및 지출액]

(단위: 만원)

구분	전체
가구소득액	181.9
가구지출액	155.5

*자료: 복지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2009.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은 월평균 15만 9천원으로 나타남. 이는 2005년의 조사결과(월평균 15만 5천원)보다 소폭 증가한 상황임.

○ 취업상태

-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41.1%이며, 실업률은 8.3%로 약 7만명이며, 전체 실업률 3.3%에 비해 2.5배 정도 높음.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단위: %, 명)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15~19세	26,778	380	104	276	26,398	1.42	27.37	72.63	0.39
20~29세	75,207	28,640	17,345	11,295	46,567	38.08	60.56	39.44	23.06
30~39세	158,266	83,666	72,340	11,326	74,600	52.86	86.46	13.54	45.71
40~49세	356,232	215,163	196,366	18,797	141,069	60.40	91.26	8.74	55.12
50~64세	684,182	357,560	334,495	23,065	326,622	52.26	93.55	6.45	48.89
65세이상	770,935	165,431	159,405	6,026	605,504	21.46	96.36	3.64	20.68
계	2,071,600	850,840	780,055	70,785	1,220,760	41.07	91.68	8.32	37.65
전국 ¹⁾	39,804,000	24,032,000	23,245,000	787,000	15,772	60.4	96.7	3.3	58.40

*통계청, 『한국통계월보(2008년 12월 기준)』, 2009.

*자료: 복지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2009.

○ 직종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취업장애인의 경제활동분야는 단순노무직 29.4%, 농·어업 23.5%, 판매종사자11.8%, 서비스종사자9.8%, 기능원·관련 기능 근로자8.1%에 편중됨. 반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에서 일반인의 경제활동분야를 보면, 사무종사자 14.3%, 서비스 종사자12.5%, 단순노무직 11.7%, 판매종사자 11.3%임.

[경제활동분야(직종)]

(단위: %)

구분	의회의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어업	기능원·관련 기능 근로자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단순노무직	계
2008년	1.1	2.0	2.9	4.2	9.8	11.8	23.5	8.1	7.2	29.4	100.0
2005년	1.0	2.6	5.4	6.3	7.2	8.9	19.0	12.3	9.7	27.6	100.0
전국 비율 ¹⁾	2.3	8.8	11.2	14.3	12.5	11.3	6.7	10.2	11.0	11.7	100.0

*통계청, 『2007년 경제활동인구연보(4/4분기)』, 2008. 5.

*자료: 복지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2009.

○ 직장유형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나타난 취업장애인의 직장유형을 보면, 자영업이 47.0%로 가장 높고, 일반사업체는 41.0%로 조사됨.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52.6%), 자폐성장애(39.3%), 지적장애(18.05%)는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같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비율이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높음.

[취업 장애인의 직장 유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 장애
자영업	47.2	41.3	53.7	51.4	32.7	24.4	0.0	14.5
일반사업체	42.5	40.6	35.0	36.8	55.4	44.7	27.1	20.0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	4.6	5.1	5.5	2.0	3.6	1.2	0.0	0.0
장애인 보호작업장	0.2	2.3	0.0	0.0	0.0	18.0	39.3	52.6
장애인근로사업장	0.0	0.0	0.0	0.2	0.0	6.2	0.0	8.2
장애인관련기관	1.2	4.5	0.2	1.0	0.0	0.8	23.4	4.6
기타	4.3	6.1	5.6	8.7	8.3	4.8	10.2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25,629	23,747	89,383	80,777	4,266	24,122	354	8,356

구분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자영업	42.7	48.9	63.3	44.8	31.7	59.0	42.7	47.0
일반사업체	52.2	41.9	31.0	38.3	62.9	31.6	48.4	41.0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	4.4	7.3	1.1	15.8	3.8	4.6	3.9	4.3
장애인 보호작업장	0.0	0.0	0.0	0.0	0.0	0.0	1.4	1.3
장애인근로사업장	0.0	0.0	0.0	0.0	0.0	0.0	0.0	0.3
장애인관련기관	0.0	0.0	1.4	0.0	1.0	0.0	0.0	1.2
기타	0.8	1.9	3.2	1.2	0.5	4.8	3.8	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9,331	2,808	2,387	1,871	1,171	3,490	2,361	780,053

*자료: 복지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2009.

○ 임금 수준

- 취업장애인의 임금은 월 평균 115만 6천원으로 2005년 114만 9천원에 비해 7천원 증가했으나, 물가인상률 및 임금인상률을 고려했을 시 오히려 실질임금은 줄어든 것으로 보임.
- 특히, 자폐성장애인의 월평균 소득 23만 2천원, 정신장애인의 월평균 소득 23.7만원, 지적장애인의 월평균소득 41.0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3분의 1 이하에 그치고 있음. 세 장애유형의 임금이 낮은 까닭은 대부분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같은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취업 장애인의 임금수준]

(단위: 만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2008년	121.4	104.5	136.8	88.5	92.7	41.0	23.2	23.7	147.5	97.8	86.5	235.2	124.2	84.5	66.4	115.6
2005년	125.5	99.9	115.5	83.8	81.4	47.5	70.0	54.8	153.8	74.1	81.6	176.6	112.2	124.1	43.5	114.9

*자료: 복지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2009.

3)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사회 및 국가에 대해 등록장애인들은 의료보장이 30.1%로 가장 높았고, 2위 소득보장, 3위 주거보장 순이었음.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주거보장	15.4	6.6	12.4
장애예방	3.6	4.3	5.1
보육·교육보장	3.5	4.1	5.0
의료보장	30.1	28.9	15.6
이동권보장	3.1	3.5	6.2
고용보장	8.6	12.5	9.8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보장	1.4	3.8	6.1
소득보장	21.9	25.5	21.4
장애인 인권보장	5.7	6.5	9.3
장애인 인식개선	4.3	4.0	8.5
없음	1.8	0.0	0.2
기타	0.7	0.3	0.4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37,226	2,074,880	1,970,848

2 장애인 고용 정책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실효성 논란

- 우리나라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로 대표됨.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제도로서 근로자 총수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임. 일반노동시장에서 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려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는 고용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1990년도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현재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의무고용제도를 채택함. 제정 당시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1%에 불과했으나, 1993년 2%로 상향 조정된 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음. 2008년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 의무고용율을 적용받게 됨.

[의무고용율 변화]

기간	1990년	1992년	1993년 이후~현재까지
의무고용율	1%	1.6%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부터 3% 적용)

-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는 시행 초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로 한정됐으나, 2004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하였음. 다만, 의무고용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았을 시 고용부담금(부담금 기초액: 1인당 50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적용 또는 면제하였음. 부담금 납부 대상 의무고용사업주는 다음과 같음.

[의무고용사업주 부담금 납부의무 현황]

의무고용사업주 (상시근로자)	부담금 납부의무 발생 시기	비고
200~299인	2006년부터	최초 5년간 1/2 감면
100~199인	2007년부터	최초 5년간 1/2 감면
100인미만	없음	부담금 납부 의무 면제

* 출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문제임. 1990년 법 제정 이후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2%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했으나 2008년 현재까지도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

- 2008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율은 1.72%에 불과하며, 국가 및 지자체 역시 1.76%에 불과함.

[2008년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개소, 명, %, %p)

구분	사업체수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수	고용률	'07년 대비
계	22,106	6,035,950	111,043	104,132	1.73	0.19↑
국가지자체	79	824,164	16,526	14,468	1.76	0.16↑
민간부문	22,027	5,211,786	94,517	89,664	1.72	0.19↑
공공 기관	253	288,225	5,645	5,899	2.05	0.09↑
민간 기업	21,774	4,923,561	88,872	83,765	1.70	0.19↑

* 연도별 고용률: 1.18'03 → 1.37'04 → 1.55'05 → 1.37'06 → 1.54'07 → 1.73'08

* 출처: 노동부, 「2008년 장애인 고용 현황」, 2009. 07.

- 특히,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의무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이 필요함.

[민간기업 장애인고용 현황]

(단위: 개소, 명, %, %p)

구분	사업체수	상시근로자수	고용외인원	장애인수	고용률	'07년 대비
계	21,774	4,923,561	88,872	83,765	1.70	0.19↑
50~299인	19,169	2,085,212	33,358	40,224	1.93	0.24↑
300~999인	2,059	1,039,943	19,818	17,929	1.72	0.19↑
1000인 이상	546	1,798,406	35,696	25,612	1.42	0.12↑

※ 연도별 고용률

	1.04	1.29	1.45	1.32	1.51	1.70
	'03	'04	'05	'06	'07	'08

*출처: 노동부. 「2008년 장애인 고용 현황」. 2009. 07.

○ 2008년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

- 2008년 11월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제출함. 이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을 고용기간, 장애정도, 성 등을 고려해 차등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민간부문 의무고용인원 중 장애정도별 비율을 보면,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짐. 2007년에는 중증장애인 고용율이 17.9%에 불과한 상황임. 따라서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는 필요한 상황임.

[민간부문 의무고용인원 중 장애정도별 비율]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의무고용	경증	87.9	86.5	84.5	83.9	82.4	81.2	81.6	82.1
	중증	12.1	13.5	15.5	16.1	17.6	18.8	18.4	17.9
등록장애	경증	48.2	50.5	52.0	54.2	55.6	56.9	58.0	59.1
	중증	51.8	49.5	48.0	45.8	44.4	43.1	42.0	40.9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계획 및 실시사항 보고(2000년부터 중·경증 구분하여 장려금 지급)

주 : 지체장애3급은 의무고용에서는 상지장애인만, 등록장애인에서는 하지장애인도 포함

*출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9. 04.

- 게다가 의무고용인원 중 성별 비율도 여성이 12.93%로 매우 낮은 상황임.

[의무고용인원 중 성별 현황]

(단위 : 명, %)

계	남	여
89,664(100.0)	78,079(87.07)	11,585(12.93)

*자료: 복지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2009.

-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제도 도입 20여년이 다 되도록 2%로 머물러 있는 상황임. 이를 상향조정 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을 고용기간, 장애정도, 성 등을 고려해 차등지급하는 안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음.

- 이미 2004년 정부는 장애인고용장려금(장애인의무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을 기금 불안정을 이유로 대폭 삭감시킨 바 있음. 결국 중증장애인과 장애여성이 사업장에서 대거 해고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음. 장애인 고용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생색내기 및 탁상행정적 불과한 실정임.

- 2009년 4월 환경노동위원회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에서도 정부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기금수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부담금과 임금 부담 감소에 따라 경증장애인의 신규고용 기피와 이미 고용된 경증장애인 마저 해고시키는 등 경증장애인의 고용을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의 운영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무고용율을 조정하는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또한 동보고서에서는 고용기간 등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차등지급안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따른 경우 고용장려금을 고용기간에 따라 축소시키는 근거가 될 우려가 있고, 경증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축소 지급하는 것은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증장애인 고용 인센티브 약화에 따른 고용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장애인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20여년 동안 변하지 않은 장애인의무고용율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인상, 미준수 사업장에 벌금 누진제 실시,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에 대한 더블카운트제도 도입 등을 포함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부문(특히 교육 분야) 장애인 고용율은 2007년 0.71%에 불과)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2) 최저임금적용 제외 등 노동조건 문제1)

-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법은 1986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그동안 노동을 하는 모든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 왔음. 그러나 법 제정 당시 장애인, 수습노동자, 직업훈련 양성훈련자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근거를 두어, 최저임금 혜택에서 제외시켜 왔음.
- 다행히 2005년 최저임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였던 수습노동자 및 직업훈련 양성훈련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었음. 그러나 장애인(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남겨 놓은 상황임.

[최저임금법의 감액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

대상	1986년 제정	2005년 개정
감액적용 (최저임금법 제5조)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의 노동자	1.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최저임금액에서 10% 감액 적용) 2.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최저임금액에서 20% 감액 적용)
적용제외 (최저임금법 제7조)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3.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 직업훈련중 양성훈련을 받는 자 4.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삭제 3. 삭제 4.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자료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 자료출처: 단병호의원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2007.

- 정부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취지를 “임금은 근로의 양과 강도 등에 따라 결정·지급되며 최저임금 또한 이러한 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노동자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낮거나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고용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등 특수한 경우의 일부 노동자에 대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다만 사용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한 경우 노동자 보호의 취지에 반할 수 있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노동부, 2006).
- 그러나 최저임금제가 서구에서 주로 여성 및 아동 등 취약 노동자 계층을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사회적 관점에서 출발했음을 상기해 본다면, 생산성을 근거로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

1) 단병호의원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2007.

용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 제1조에서도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으로 밝힘. 이러한 취지에 따라 2000년 11월 24일 이후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이 의무화된 바 있음.

- 즉,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의 양과 강도에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서 가장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 볼 수 있음. 특히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자, 임금 구조의 기본적 하한선 역할을 최저임금이 담당한다고 볼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은 특히 장애인, 여성 등 저소득 노동자로 내몰릴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라 할 수 있음.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일 뿐임.
- 현재 장애인이 처해 있는 고용·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고용기회를 확대한다고 하나, 열악한 노동조건을 수반한 고용기회 확대는 사실상 장애인에게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음. 오히려 장애인을 최저임금의 대상으로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
- 만약 장애인을 최저임금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시 장애인 고용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최저임금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되 정확한 업무능력평가를 통해 일정정도 감액을 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음.
- 각국의 사례를 보면, 장애인 노동자를 최저임금 특례대상으로 두는 국가들이 있긴 하나 원천적으로 적용제외 시키는 경우는 한국과 일본 정도가 전부임. OECD 국가의 경우 대체적으로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감액적용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음. 장애인을 감액 적용 대상으로 삼는 미국의 경우 장애인에 대해 저비율 적용이 가능하나, 노동생산성 격차 이상의 최저임금의 감액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프랑스의 경우 장애인에 대해 10~20%의 감액 적용을 허용하며, 룩셈부르크는 일정기간 동안만 감액적용을 하고 있음. 포르투갈은 50%까지 감액을 허용하고 있음.
- 국제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보면, “ILO협약 제159호에서는 “남녀 장애인에 대한 기회 및 대우에 있어서의 평등은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과 다른 노동자간의 기회 및 대우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평등을 위한 별도의 적극적 조치는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노동연구원(2003) 연구에 따르면, 분석대상 14개국 중에서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또는 감액적용 규정이 명시적인 국가는 8개국이며, 감액적용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음.
- 노동연구원(2003)은 국제기준 및 다른 OECD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장애인노동자에 대해 최저임

금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국가가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지적함. 특히 최저임금 운용실태 및 개선의 건조사의 분석결과, 장애인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은 노동자 75%, 사용자 59%로 나타나고 있음을 근거로, 해당 노동자뿐만 아니라 해당 사용자의 경우에도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힘.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찬성 비율]

(단위: %)

	사용자	노동자
찬성비율	59.0	75.0

* 자료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운용실태 및 개선의견조사」, 2003.5.

- 이에 근거해 노동연구원(2003)은 최저임금제도에서 실효성이 없고 차별적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할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최저임금 감액정도는 다른 법률조항과의 관계를 고려하되 장애정도와 업종과 직종 및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는 '당해 노동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장애인이 아닌 중증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축소를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임(노동연구원, 2003).

3) 직업훈련 및 알선 등 전달체계²⁾

- 현재 장애인 고용 전달체계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음. 이로 인해 장애인 고용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많은 수의 장애인이 법과 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음. 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모델을 발굴하고, 직업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직업재활 과정의 전문화 및 체계화 필요.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후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 '받았다'는 응답은 3.9%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직업훈련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훈련 중	아니오	계	전국추정수
비중	3.9	0.3	95.8	100.0	2,071,595

*자료: 복지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2009.

2) 단병호의원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2007.

- 반면, 노동부가 실시한 「2005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16,812개 사업체에게 가장 주된 장애인 미채용 사유를 물어본 결과, '업무에 적합한 장애인력 부족'이 40.4%로 나타남. 결국 장애인은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사업체는 훈련된 장애인이 없어서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구직 장애인과 사업주가 원하는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독일을 비롯하여, 많은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직업알선과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표로 하는 고용관련기관에서 장애인 직업알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위해서는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고용업무를 전담해야 함.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전문적인 직업훈련서비스 개발 및 관리, 취업한 장애인 및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장에서의 적응지도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면서 고용지원센터의 장애인 고용업무 전담 팀과의 연계를 유기적으로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관련해 적극적 구인처 개척을 위한 직업알선 서비스 전문인력의 충원 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

3. 장애인 현금지원 정책

1) 복지부 2009년 장애수당 삭감

○ 2009년 복지부 장애인 예산 43억원 삭감

-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제3차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58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오히려 복지부 소관 2009년 장애인 복지 예산은 2008년 대비 43억 8천만원이 삭감됨.

[복지부 장애인 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08예산 (A)	'09예산 (B)	증감 (B-A)	%	주요내역
일반회계	523,122	546,341	23,219	4.4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	138,100	110,500	△27,600	△20.0	○ 지원차량 : 240천대 ○ 지원물량 : 175리터 ○ 지원단가 : 220원/L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900	1,900	-	-	○ 지원가구수 : 1,000가구 *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 ○ 지원단가 : 3,800천원/가구 * 국비 50%, 지방비 50%
합계	663,122	658,741	△4,381	△0.7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요」, 2009. 1. 일부 수정.

○ 장애수당 등 장애인 관련 현금지원 수당 전부 삭감

- 장애인복지사업을 보면,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각종 현금 지원 예산이 모두 삭감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 예산이 3,270억원에서 2,870억원으로 12.5% 감액되었고, 장애아동수당 역시 232억원에서 226억원으로 2.3% 삭감됨.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 예산도 43.5% 감액되었으며,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사업도 13억원에서 11억원으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도 1억원에서 9천만원으로 감액됨.

- 감액된 사업들의 경우, 지원단가는 대부분 그대로여서, 예산의 증가 추세대로라면 예산이 늘어날지언정 줄어들리 없는 상황임. 예산이 삭감된 가장 큰 이유는 2009년 지원인원을 올해 대비 축소해서 추계했기 때문임.

[삭감된 장애인 복지사업 중 현금 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08예산 (A)	'09예산 (B)	증감 (B-A)	%	삭감 근거	비고
장애수당	327,891	287,036	△40,855	△12.5	○ 지원인원 감소 : 563,526→491,484명	○ 지원단가(인/월) -기초중증: 130천원 /차상위중증: 120천원 -기초차상위 경증: 30천원 -시설중증: 70천원 /시설경증: 20천원
장애아동수당	23,158	22,630	△528	△2.3	○ 지원인원 감소 : 18,033→17,590명	○ 지원단가(인/월) -기초중증: 200천원 /차상위중증: 150천원 -기초차상위 경증: 100천원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	9,780	2,180	△7,600	△77.7	○ 지원인원 동결 및 사업 이관 : 69천명(전년동) : 의료비지원사업(10,662 비지원사업으로 이관	○ 지원내용 : 의료급여보장 구구입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 부담금 15% 전액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	1,266	1,150	△116	△9.2	○ 지원인원 감소 : 1,459명→1,314명	-저소득 장애인가구 중 고생 -1,314명 중, 고 1,171명, 중 143명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100	90	△10	△10.0	○ 지원인원 감소 : 12,882명→11,077명	○ 지원단가 -일반 : 15천원 / 정산자 폐 : 40천원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9. 01. 재수정.

○ 장애수당 집행실적 부진이 정부의 예산 삭감 근거

- 장애인 관련 현금 급여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장애수당은 1990년 '생계보조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기 시작하다가, 2007년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지급수준도 중증 기준 월 7만원에서 최대 13만원으로 인상함. 장애아동수당 역시 지원대상자가 확대됨과 동시에 2007년 월 7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지원단가가 상향조정됨. 국회예산정책처(2007)에 따르면, 장애수당 단가가 인상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2007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예산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09억

원으로 장애인복지 예산 6,175억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예산은 배정예산 3,409억원을 모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집행자인 지자체의 경우 2,436억원만 집행하는데 그쳐 집행률은 7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수당 실집행률이 71.4%로 낮은 이유는 기존의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보조사업을 점차 축소하고 대신 남은 예산을 장애수당 지원 확대에 급격히 편성하면서,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부정확하게 추계했기 때문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장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준하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 따라서 장애수당만을 위해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만으로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이 장애수당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을 선별하기 위해 적극적 노력을 벌였는지 확인이 필요. 국회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집행실적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장애수당 지급만을 위해 본인 및 부양의무자 재산·소득을 전부 조사함에 따른 행정비용 과다 및 일선 담당자의 업무 폭주로 적극적인 수급자 발굴에 소홀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 또한 장애수당 실집행률이 낮은 까닭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밝힌 또다른 이유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음. 2007년 장애수당을 확대할 때 보건복지가족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차상위 계층 장애인 수급자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 2007년 예산 편성시 정부는 장애수당 차상위 수급자 기준으로 이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채택함.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장애수당에도 적용됨.

- 그러나 대상자 선정시 과도한 엄격성 때문에 실제 신청에 있어서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 신청자가 적은 문제가 발생했고, 2007년 8월 제도 시행 중간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권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 이는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등 다른 복지사업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거나 재산기준과 관련해서도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임.

[장애수당과 타 급여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사업명	본인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사업	·재산기초공제액: 대도시 3,800/중소도시 3,100/농어촌 2,900만원 ·재산소득환산율: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100%)	·재산기준 적용 ·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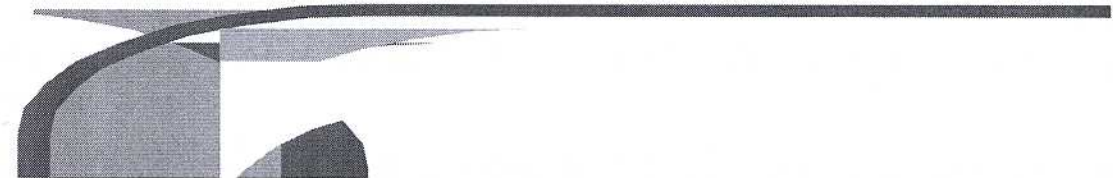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준과 동일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준과 동일→2007년 8월 1일 폐지
의료급여 (차상위)	·재산기초공제액: 대도시 9,500/중소도시 7,750/ 농어촌 7,250만원 (기초수급자의 250%)	·재산기준 미적용 ·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
기초노령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시 기본재산액 미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상관없이 연5%(3년 만기정기예금 금리수준)	·미적용
산모신생아도우미	·소득기준만 적용: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60% 이하 ※소득판별기준은 건강보험료 고지액에 근거	·미적용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7 회계연도 결산관련 부처별 요구자료」, 2008. 4. 재수정 국회예산정책처, 「2007 회계연도 결산분석 III」, 2008. 7. 재인용.

- 장애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보전한다는 본래적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수급자 발굴 노력이 중요하며, 과도한 업무 폭주로 인해 수급자 발굴 노력을 외면할 수 있는 일선의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 인력 확대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장애유형에 맞는 장애수당제도로 개선 필요

- 「2008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1만 9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 소득(2008년 기준 3,370천원)의 54.0% 수준임. 이는 미국 70%, 영국 77%, 스웨덴 97% 등 타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임.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06년 8월 보도자료), 「국민과 함께 읽는 정책보고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은 월평균 15만 8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장애수당은 정부 실태조사에도 못미치는

2~13만원으로, 2007년 이후로 3년 동안 동결된 상황임. 장애이동수당, 장애인등록진단비 모두 마찬가지로 동결됨. 오히려 장애수당은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지급대상을 평균소득 이하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게다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장애유형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간장애가 87만 1천원으로 가장 높고, 자폐성장애 35만 4천원, 신장장애 33만 4천원, 안면장애 31만원, 청각장애 24만 3천원인 상황임. 장애유형에 따라 적정한 장애수당을 지급해야 함.
- 또한 추가비용 중 의료비 5만 7천원으로 가장 높고, 재활보조기구 구입 및 유지비 3만 7천원, 보호 및 간병인비로 1만원을 차지하는 등 의료비 관련 지출이 10만 4천원을 차지하고 있음. 무상의료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단위: 천원)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추장애	간질장애	전체
총 추가비용	127.5	212.9	56.7	243.3	139.8	207.0	354.1	64.6	334.0	189.4	192.5	870.6	306.1	126.3	87.3	158.7
교통비	18.9	19.0	12.0	3.6	14.5	29.2	49.7	8.9	42.5	19.8	24.4	33.7	24.6	11.4	11.4	17.8
의료비	49.2	91.0	20.0	6.2	50.0	29.1	43.2	34.6	258.2	161.4	103.0	807.1	242.2	42.9	57.1	57.3
교육비	0.4	4.1	1.9	5.8	20.9	61.5	129.5	0.0	0.0	0.5	0.1	0.0	1.1	0.2	3.1	6.2
보호·간병인	5.2	33.2	3.3	2.1	12.0	25.0	14.6	9.4	11.7	1.6	3.3	2.1	4.8	0.8	1.7	9.9
재활기관이용료	0.1	2.6	0.0	0.0	4.9	19.2	56.2	0.0	0.0	0.0	0.0	0.0	0.0	0.0	0.2	2.0
통신비	0.2	0.4	5.3	5.6	2.0	0.8	1.1	0.1	0.3	0.2	0.5	0.1	0.8	0.4	0.4	1.4
재활보조기구 구입·유지비	16.4	28.9	11.1	213.2	17.5	0.0	1.7	0.0	11.6	2.9	50.4	12.5	2.3	61.9	0.0	36.8
부모사후대비	3.2	7.9	0.9	5.0	12.9	34.6	46.5	6.8	5.5	1.1	0.7	8.8	26.8	2.5	7.7	6.2
기타	33.9	25.7	2.3	1.8	5.0	7.4	11.7	4.7	4.2	1.9	10.2	6.3	3.5	6.1	5.9	21.2

*자료: 복지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2009.

2) 정부의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 문제점

○ 정부안

- 2009년 7월 23일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이 복지부에 의해 입법예고된 상황임. 이 안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를 연금 대상자로 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촌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자는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 장애연금액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하는데, 기본급여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함. 다만, 수급권자와 배우자가 모두 기본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기본급여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또한 부가급여액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수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이 안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음. 첫째는 대상자 선정의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장애연금액에 대한 문제임.

○ 대상자 선정의 문제

- 경증장애인 역시 중증장애인에 비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임. 노동시장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인 개선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경증장애인 역시 소득보장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게다가 정부안은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를 연금 대상자로 하고 있음. 특히 1촌 직계 혈족의 소득인정액까지 산정해 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사실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장애인은 결국 연금 수급권자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을 것임. 장애인 가족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 본인에게는 경제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제도적 방안일 수 밖에 없음.

○ 장애연금액의 문제

- 장애연금 중 기본급여액을 국민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정부는 제시하고 있음. 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과 연동되는 2층 노후소득보장정책임을 간과한 것이며, 현행 기초노령연금액이 2028년까지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조항 역시 무시한 것임. 이것을 감안한다면 하더라도 현행 기초노령연금액은 액수가 너무 낮아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고, 용돈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상황임.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 (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장애연금 중 부가급여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월평균 15만 9천원이 되어야 하며, 장애유형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임.

「참고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7 회계연도 결산분석 III」. 2008. 7. 재인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9. 04.
 노동부. 「2008년 장애인 고용 현황」. 2009. 07.
 단병호의원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2007.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2009.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9. 0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06년 8월 보도자료). 『국민과 함께 읽는 정책보고서』

「홈페이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 환경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법제처 홈페이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부 홈페이지.

문제의 제기: MB정부와 장애인 인권2

제2마당

- 진행 : 노금호(대구장차연 집행위원장)
- 강연 : 촛불정국,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진중권(중앙대학교 겸임교수)
민중의 사회적 권리의 현실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촛불정국,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진중권 |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MB 정권에서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역설적으로 인권의 가치를 증명해준 MB 정권

류은숙 |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들어가며>

MB 정권에서 지금까지 벌어진 인권 침해 사건들을 생각나는 대로 꼽아봤다.

○ 소수자는 안중에 없어

-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극심한 집중 단속/구직기간 2개월 제한
임신 8개월 여성을 체포하고 총을 겨누는 등 위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아; 통보 의무(출입국 관리법에서 공무원이 미등록 체류자를 발견하는 즉시 출입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를 없애고 '선구제 후통보'를 법률로 명시하라는 인권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오히려 통보의무 적용 강화로 대응(2007년 11월 8일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질문 등 단속절차 및 영장 없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조사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대책 백지화, 국가인권위 축소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등 수많은 사례

○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생계비 결정/생색내기 민생대책

- MB가 서민 생활을 위해 꼭 잡겠다고 공언한 소위 'MB 물가지수'는 상승률이 7.8%에 달하고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계획돼있는데 2008년 8월 결정한 2009년 최저생계비의 인상은 4.34.6%에 불과, 이는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인상
- 붕고차 모녀, 시장 방문 빵튀기 사먹기 등 행보/기초생활지원 예산(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등) 대폭 삭감(2350억 규모)
- 저임금의 '노동권' 없는 한시적 일자리로 점철된 소위 '희망근로프로젝트'

○ 미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사법처리

2008년 5월 2일 청계천에서 시작돼 거의 두 달 간 매일 지속된 촛불집회 불법화, 관련 시민들에 대한 대규모 사법처리/신영철 대법관 촛불 관련 재판 개입

○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비정규직 고용불안 확산하는 기간제·파견제 근로 사용 기간 연장법안/집단해고와 노동자 사망/쌍용자동차/최저임금 삭감

- 불법파견, 부당해고 등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농성이나 시위에 대해 기업주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경찰은 벌금을 청구하고 있다. 일례로 불법파견으로 저임금에 시달리다 부당 해고된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벌금과 손해배상 액수는 무려 12억 원을 넘었다.
- 2009년 3월 13일 기간제·파견제 근로 사용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쌍용자동차, 식료품, 물, 가스, 의약품 반입금지, 의료진 출입금지...
- 2010년 최저임금을 2.75% 인상된 4,110원에 결정. 하지만 생계비와 직결되는 소비자 물가 인상에 못 미치는 결정이기에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

○ 교육문제의 심화;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전국 일제고사

- 2008년 2월 18일 MB 대통령직 인수위 앞에서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던 대학생 27명이 연행됐다. 2008년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평균 6-9%, 국공립대는 8-14%, 시민사회와 대학구성원들의 등록금 문제 해결 대안은 계속 무시하다가 2009년 8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내놓고 갖은 생색, 하지만 여러모로 가우뚱
- 전국 일제고사 재도입, 일제고사 반대 교사 해임
-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조치

○ 국가인권위 무력화 시도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산하에 두려해, 국가인권위 인원 대폭 감축, 안경환 전 위원장 임기 못 채우고 사퇴, 무자격자 인권문외한을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

○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2009년 1월 20일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막가파식 개발정치와 경찰 살인 진압의 합작품인 사건

○ 표현의 자유 억압

미네르바 긴급체포, PD 수첩 기소, 미디어 법 개악,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탄압, 사이버 모욕죄 도입 시도, 군내 불온도서 반입 차단 대책 강구 지시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 파면 등

○ MB 악법 대량양산

수도민영화, 의료민영화법, 일명 조중동 방송법, 제벌방송법, 집시법+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금산분리완화법...소위 MB 악법은 85개에 이르고 그중 중점처리 법안도 수십 개.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

1. 인권이 '사치품'이 아니라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 '필수품'임을 증명해줬다.

MB 정권이 집권하고 1년 반 밖에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죽음들이 있었다. 박종태 화물연대 노동자의 자살,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 소위 이 사회의 엘리트들에게 사회적 타살을 당한 장자연,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병으로 사망한 기륭전자 조합원, 등록금을 내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가 자살한 대학생, 쌍용자동차에서 자살한 노동자의 아내와 또 다른 죽음들, 심지어 전직 대통령도 정치적 타살로 생명을 잃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은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인권에서 요구하는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권에 대한 흔한 오해, 특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오해는 좀 나중에 먹고 살만 해지면 도달할 목표, 또는 멀리 두고 추구해야 할 최고 목표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인권침해로 인해 사람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 인권은 한국 사회에 지금 당장 필요한 '필수품'이다.

2. 인권의 불가분성을 보여줬다. 자유 또는 평등이라는 이분법이 잘못된 걸, 자유와 평등이 한 뿌리라는 걸 철저히 증명해줬다.

자유권과 사회권의 이분법적 도식은 인권의 온전한 실현을 방해해 온 오랜 병폐이다. MB 정권의 인권침해는 역으로 그런 이분법이 잘못된 것임을 철저히 증명해줬다.

정치적 독재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그 역도 마찬가지다. 불평등한 체제에 대한 불만을 억압하기 위해 자유는 억압될 수밖에 없다. 배고프고 몸 누일 곳 없고 일자리 없는 사람이 자유를 누

린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인권의 성격을 인권의 '불가분성' 또는 '상호의존성'이라 한다. '자유 없이 평등 없고, 평등 없이 자유 없다'는 말, '평등할수록 더 자유롭다'는 말, '자유 없는 평등은 노예의 평등'이라는 말이 다 이런 인권의 성격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인권의 성격은 자주 무시돼왔다. 인권을 나눠서 편을 가르고, 한편은 인권으로 치고 다른 한편은 인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바라는 것 욕망하는 것쯤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고질적인 인권의 이분법이다. 어떻게 편 가르기를 하는가 하면 인권의 한편을 '자유권(시민·정치적 권리)'으로 다른 한편을 '사회권(경제·사회·문화적 권리)'라는 범주로 나누는 것이다.

인권의 상호의존성은 권리개념을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개념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잘못된 이분법의 구축을 받기보다는 무엇보다 중요한 목적이자 근본가치인 인권존중이라는 견지에서 추구돼야 한다. 잘못된 이분법은 인권을 형식적인 것으로 몰아갈 수 있다. 어떤 권리가 어떤 범주와 법률에 속하느냐가 아니라 인권의 기초인 인간애에 일관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경직된 범주화를 깨뜨리는 것 자체도 중요한 인권투쟁이다. 효과적인 인권보장이란 불리하고 취약한 집단의 구성원에 특히 유념하여, 권리를 진정으로 모든 사람의 것으로 만들기에 뭐가 필요한가를 총체적으로 해석해서 나오는 결과여야 한다. 범주는 임시로 만들어진 것이고, 전체의 부분에 불과하며, 관계 속에서만 이해된다. 가령 자유권에 있는 생명권은 사회권에 있는 건강권과 관계 속에서 보면 아주 달라 보인다.

3.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많다는 걸 증명해줬다.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이다.

사회권 옹호 활동가들을 항상 괴롭히는 것은 재원 마련에 대한 추궁이다. MB 정권은 그간 이 정부가 쓸 돈이 얼마나 많은가를 증명해줬다. 재원이 많아서 소위 '강부자'들에게 세금을 대폭 삭감해줄 수 있고, 천문학적 돈이 드는 위장 대운하 사업, 금융자본 살찌우기, 부동산 투기와 개발 등을 위해 쓸 돈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줬다. 맨날 등록금 인상 타령 하는 대학들이 건축 적립금으로는 몇조원을 적립해두고 장학금은 몇천억원밖에 적립해두고 있지 않다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다. 기득권 정부는 기득권 강화에 초점을 두고 쓸 돈은 많지만 그들을 위해 희생되는 사람들을 위해 쓰는 돈은 저항을 단속하고 때려잡기 위해 쓰는 돈이거나 생색내기 일시구제, 또는 온정과 시혜에 쓰는 푼돈일 뿐이다. 문제는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다.

<우리의 할 일>

1. 승패/약육강식에 정면 대응하는 우리의 가치 옹호

이기고 지느냐가 우리의 가치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변화다. 인권의 가치를 누가 어떻게 옹호하느냐가 변화를 이끈다. 시장만능주의나 성장지상주의 혹은 물신주의가 아닌 다른 가치가 필요하

다. 효율, 경쟁을 강조하면서 모두에게 '기업'으로의 변신을 요구하는 데 맞서는 우리의 가치를 보듬자. 경쟁이 아닌 연대, 이윤창출이 아닌 필요충족, 부를 창출해야 부를 소유한다는 등식을 초월하여 노동과 직접 관계없는 인간 생존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우리의 가치다. 인간간의 관계를 몽땅 시장경제적 관계로 바꾸려는 데 맞서 인간간의 관계를 복원하고 재창조하자.

인권의 핵심가치는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타자를 향한 존중이다. 그리고 인권활동을 통해 그 인간에 대한 연민과 공감, 연대를 만들고자 한다. 반면 저들의 핵심가치는 억압을 통한 이윤의 확보이지, 인간존중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리고 약해 보일지라도 이 핵심가치에서 저들과 확실하게 다르다.

2. 인권의 행동이 이론을 만든다

인권투쟁, 특히 사회권 투쟁에는 소위 이론이 부족하다. 하지만 인권의 이론은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규범의 변화는 규범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인권은 시민 일반에게 규범이지만 사실상 인권을 부정당하고 있는 사람이 인권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은 늘 규범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인권의 가치는 잔인한 정치경제적 관행에 대해 따져 묻는데 있다. 이것이 인권이 가진 잠재성이다. 인권투쟁은 온갖 인권침해 사건의 배후이자 행동대인 정권과 자본의 잔인성에 대해 따져 묻는다. 저들의 대답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따져 묻는 행위의 정당성은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다.

실천 전략 만들기:
 MB정부와 장애인 인권3

제2마당

- 진행 : 김기룡(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실천전략 만들기 1]00에게 ---이란?

[주제·목표]

- : 이명박 정부 하에 민중의 삶을 이해한 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실천전략을 모색해 본다.
- : 실천전략을 모색하기 전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 우리가 모인 의미 등을 되묻고 소통해 본다.
- : 각자가 받은 질문과 각자가 내린 답은 실천전략의 씨앗인 '시국선언문'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다.

[준비물품]

색지(참가자수*1장), 낱말카드(참가자수*1장), 크레파스, 매직, 가위, 풀, 색종이, 테이프 등

[진행방법]

■ 00에게 ---이란?(총 30분)

▶ 참가자들은 모둠별로 앉는다.

① 참가자들에게 낱말카드를 하나씩 나눠준다.

예)명박, 장애인운동, 인권, 전장연, 자립생활, 투쟁, 법, 동지, 자유, 평등, 연대, 진보, 억압, 폭력, 저항, 대한민국, 권력, 정치

- ② 참가자들은 낱말카드를 사용해 자신의 이름을 넣어 '00에게 ---이란?' 이라는 질문을 만들어본다.
- ③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가지고 있는 색지에 간단한 문장으로 적어본다.
- ④ 질문에 대한 답을 적은 후, 모둠별로 자신이 받은 질문과 자신의 답을 돌아가면서 말해보고 소통한다.
- ⑤ 소통하면서 각자의 생각을 덧붙여 말해보면서 생각의 차이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천전략 만들기 2]시국선언문 만들기

[주제·목표]

- : 국가는 3가지 의무(가해자가 되어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존중의 의무', 제 3자에 의한 인권 침해를 예방해야 할 '보호의 의무',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실현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 : 국민은 정당성 없는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 '저항권'을 갖고 있다.
- : 이명박 정부 하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와 저항해야 할 것들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국선언문'을 제작해 본다.
- : 시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씨앗을 싹틔워본다.

[준비물품]

시국선언문 개요(예시안), 모둠별 전지 2장, 크레파스, 매직, 가위, 풀, 색종이, 테이프 등

[진행방법]

■ 시국선언문 만들기(총 1시간 30분)

▶ 참가자들은 모둠별로 앉는다.

- ① 앞선 프로그램 '00에게 ---이란?'라는 질문의 답인 문장들을 사용하여 모둠의 색깔과 향기가 드러나는 시국선언문을 만들어본다.(20분)
- ② 다음과 같은 물음을 골격으로 시국선언문의 뼈대를 만들어볼 수 있다.

예)

1.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2. 누구와 함께 연대할 것인가?
3. 누가 앞장설 것인가?(아래로부터의 투쟁)
4. 언제 실천할 것인가?
5.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

③ 모둠별로 만든 시국선언문을 발표해본다.

장애인중선언문 채택

마무리 마당

- 진행 : 조성남(전장연 사무처장)

저항하라

부록

장애인운동 관련 민중가요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 장애인차별철폐투쟁가 / 장애해방가 / 장애인이동권쟁취가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김종환 글, 곡

Am C Dm G7 C E

글 중 의 사 슬 을 끊 고 다 시 일 어 서 라 동 지 여
 억 압 의 사 슬 을 끊 고 다 시 일 어 서 라 동 지 여

Dm C Am Dm B7 E

복 중 의 땅 에 쓰 린 가 슴 안 고 살 아 가 는 동 지 여
 복 중 의 땅 에 쓰 린 가 슴 안 고 살 아 가 는 동 지 여

Am C Dm G7 C E

차 별 과 억 압 을 깨 고 다 시 일 어 서 라 동 지 여
 시 험 과 동 정 을 깨 고 다 시 일 어 서 라 동 지 여

Dm C Am Dm F E Am

야 만 의 세 상 끊 고 일 어 선 자 랑 스 런 동 지 여 자
 가 열 찬 투 쟁 떨 쳐 일 어 선 자 랑 스 런 동 지 여

F G Am G7 C A

투 쟁 의 깃 발 이 높 이 솟 았 다 장 애 해 방 의 깃 발

Dm C Am F D7 B7 E

차 별 과 자 본 을 넘어 당 차 게 나 선 다 아 -

Am A Dm G7 C E

배 앓 긴 세 월 을 이 제 모 두 되 갠 주 리 라

Dm C Am B7 E7 Am

선 언 하 라 평 등 세 상 을 장 애 인 차 별 철폐 연 대 여!

장애인차별철폐투쟁가

장애인차별철폐투쟁가

김종환, 김호철 글
김호철 곡

Dm A7 Dm C7 F

수 십 년 세 월 을 골 방 에 갇 혀 시 설 에 처 박 혀
 그 누 가 우 리 를 떨 시 하 는 가 짓 누 르 고 있 는 가

Gm Dm Em7(b5) A7

차 별 과 억 압 - 피 눈 물 속 에 살 아 온 동 지 여
 야 만 과 탐 욕 속 에 일 령 이 는 자 본 의 도 시 여

Dm A7 Dm C7 F D7

자 이 제 을 타 리 깨 부 수 고 세 상 을 향 하 여

Gm Dm Bb Em7(b5) A7

장 애 인 차 별 철폐 투 쟁 깃 발 을 울 렸 다

Dm Bb C7 F

아 개 같 은 세 상 에 시 계 를 멈 춰 라

Dm Dm/C Bbmaj7 E7 A7 Dm

차 별 과 학 취 없 는 장 애 해 방 그 날 을 향 해

장애해방가

장애해방가

김호철

Bm F#7 Bm Em D F#

반 토막 몸둥이로 살 아간 다고 친 구 여이 세상 에 기 죽지 마라

Em D Bm Em G C# F#

배 틀 어 저 한 쪽으 로 사 느니 반 쪽 이라 도 울 곧 게

Bm F# Bm Em D F#

말 뿐 인 장 애 복 지 별 조 할 마저 우 리 의 생 존 을 비 웃 고 있 다

Em D Bm G C# F#

노 동 으 로 일 어 설 기 회 마저 배 앓 긴 형 제 여 아

Bm A G F#

차 별 의 폭 력 눈 총 을 깨 고 사 백 만 의 힘 으 로 하 나 로 자

Bm A F#7 G F# Bm A

외 처 볼 러 라 해 방 의 나 라 장 애 해 방 참 세 상 을 아

Bm D A7 D F#m

아 우 리 는 배 아 픈 고통 의 시련 마 저 싸

Bm G E G F# Bm

위 싸 워 야 승 리 하 리 라

장애인이동권쟁취가

장애인이동권쟁취가

글, 곡 박태승

Dm Bb A7 Dm

차 - 별 과 억 압 을 운 명 으 로 참 아 온 동 지 여 기 나

Dm Bb C7 F Dm Gm Bb Em7(45) A7

긴 힘 목 의 역 사 - 를 깨 뜨 려 - 나 가 세 인 간

Dm Bb A7 Dm

답 게 살 아 가 기 위 해 기 필 코 승 리 하 리 라 장 애

Dm Bb C7 F Dm Gm Dm/A Gm/Bb A7 Dm

해 방 의 첫 깃 발 이 여 이 동 권 쟁 취 투 쟁 이 여

C7 F Bb C7 F D/F#

지 하 철 사 방 에 툄 리 고 버 스 가 념 처 나 도

Gm Dm Gm Dm/A A7

우 리 에 게 는 또 하 나 의 벽 감 옥 이 따 로 없 다 네

Dm Gm C7 F D/F#

투 쟁 으 로 세 상 열 어 가 리 라 이 동 권 쟁 취 하 리 라

Gm D7 Gm Dm Dm9/CBb7 A7 Dm

온 몸 에 사 슬 을 묶 어 물 러 서 지 않 겠 다